

2021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귀하

본 연구물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30.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연구진

이 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장 현 선 | (주)장애파트너스 그룹
이 제 호 | (사)이주민센터 친구

연구기획

문 형 순 |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

목 차

I.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행의 목적과 배경	1	1. 종합 평가 점수 및 의견	
II. 인권영향평가 설계 및 실행	3	2. 기관운영 부분 의견	
1.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계 과정		3. 지원사업 부분 의견	
2.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특징		4. 박물관·미술관 사업 부분 의견	
3.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과정			
III.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구성	11	V. 기관운영 부분 평가 결과	69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4. 강제노동의 금지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9. 환경권 보장		9. 환경권 보장	
10. 이용자 인권보호		10. 이용자 인권보호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12. 지원사업		VI. 사업운영 부분 평가 결과	121
13.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사업		12. 지원사업	
14.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사업		13.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사업	
		14.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사업	
IV. 종합 평가 결과	61	VII. 별첨 2021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147

[표 - 목 차]

[표-1]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인터뷰 참가자 명단	[표-29] 6-1 작업장 안전
[표-2]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부분 지표 수정사항	[표-30]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표-3] 인권영향평가 지원사업 부분 지표 수정사항	[표-3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
[표-4]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부분 세부지표 수정사항	[표-32]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2
[표-5]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부분 세부지표 수정사항	[표-33]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3
[표-6]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과정	[표-34]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표-7]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표-35]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표-8]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표-36] 7-2 모니터링 실시1
[표-9]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표-37] 7-2 모니터링 실시2
[표-10] 1-4 인권경영성과	[표-38]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표-11] 1-5 구제절차 마련	[표-39]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표-12]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1	[표-40] 8-2 지식재산권 보호
[표-13]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2	[표-41]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표-14]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3	[표-42] 9-2 환경정보의 공개
[표-15]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표-43]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표-16]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표-44] 9-4 비상계획 수립
[표-17]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표-45]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표-18] 3-1 결사 · 단체교섭의 자유	[표-46] 10-2 제품 및 서비스 결함 조치
[표-19]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표-47]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표-20]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표-48]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표-21]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표-49] 11-2 혐오표현의 근절
[표-22] 4-1 강제노동 금지	[표-5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영역 비교
[표-23] 4-2 재단 소속 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표-51]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1
[표-24]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1	[표-52]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2
[표-25]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2	[표-53]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3
[표-26]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3	[표-54]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4
[표-27]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1	[표-55]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1
[표-28]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2	

[표-56]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2	[표-84]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사업 부분 평가점수
[표-57]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3	[표-85] 기관운영 부분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58]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4	[표-86] 지원사업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59]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1	[표-87] 박물관·미술관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60]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2	[표-88]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61]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3	[표-89]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2]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4	[표-90]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3]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5	[표-91]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4]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6	[표-92] 1-4 인권경영성과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5] 12-4 지원사업 운영 1	[표-93] 1-5 구제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6] 12-4 지원사업 운영 2	[표-94] 2.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67] 12-4 지원사업 운영 3	[표-95]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8] 12-4 지원사업 운영 4	[표-96]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69]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1	[표-97] 2-3 비정규직 노동자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0]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	[표-98]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1]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3	[표-9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72]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지표 영역	[표-100]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3] 13-1 전시기획	[표-101]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4]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표-102]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5]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표-103] 4.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76]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표-104] 4-1 강제노동 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7] 14-1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지표 영역	[표-105]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78] 14-1 교육기획	[표-106]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79]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표-107]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80]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표-108]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81]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표-109] 6. 산업안전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82] 기관운영 부분 평가 점수	[표-110] 6-1 작업장 안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83] 지원사업 부분 평가 점수	

[표-111]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7] 12-4 지원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12]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8]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13]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9]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점수
[표-11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40]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박물관
[표-115]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1]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미술관
[표-116] 7-2 모니터링 실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2]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백남준아트센터
[표-117]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3]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실학박물관
[표-118]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44]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전곡선사박물관
[표-119]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5]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어린이박물관
[표-120] 8-2 지식재산권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6]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표-121] 9. 환경권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47] 13-1 전시기획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표-122]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8]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
[표-123] 9-2 환경정보의 공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49]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백남준아트센터·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표-124] 9-3 환경정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50]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실학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표-125] 9-4 비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5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표-126] 10. 이용자의 인권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5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세부결과 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표-127] 10-1 이용자를 위한 법령 준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53]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점수
[표-128]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54]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박물관
[표-129]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0]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31]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2] 11-2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3] 12.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134]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5]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36]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표-155]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미술관

[표-156]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백남준아트센터

[표-157]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실학박물관

[표-158]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전곡선사박물관

[표-159]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도어린이박물관

[표-160]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_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표-161] 14-1 교육기획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표-162]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실학박물관·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

[표-163]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백남준아트센터·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표-164]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표-165]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표-166]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

[표-167]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세부결과
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그림 - 목 차]

- [그림 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2021년과 2022년 평가결과 비교)
 - [그림 2]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 [그림 3]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4]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6] 4.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7]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8] 6. 산업안전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9]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10]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11] 9. 환경권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12] 10. 이용자 인권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13]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 [그림 14] 12. 지원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그림 15]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그림 16]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

1.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행의 목적과 배경

I.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행의 목적과 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 점검 의무의 핵심도구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실천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인권경영 구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하였으며,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2019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인권경영선언문과 인권경영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음.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인권영향평가 실시는 윤리와 정의의 측면 그리고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의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함. 또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권에 관한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임.
- 2020년 경기문화재단은 재단의 업무특성에 맞는 문화영역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의 인권영향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화다양성, 괴롭힘, 혐오표현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1년에는 2020년 첫 번째 평가의 미비점을 돌아보고 지표 및 평가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업영역에 대한 별도의 지표 설계를 추가하였음.
-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이 가지는 문화분야의 특수성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완성하고,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인권경영은 물론, 경기도의 인권 및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인권영향평가 설계 및 실행

II. 인권영향평가 설계 및 실행

1.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계 과정

가. 국내외 사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인권경영지표 보완과 추가 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활용함.
- 또한, 인권경영과 관련한 최근의 국내외 자료를 추가하여 살펴보고, 주요 쟁점 및 동향을 파악했으며, 더불어 경기문화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자료와 절차 등을 수집 분석하여 지표개발에 참고함.
- UN의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자료 및 EU의 관련 자료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경기문화재단에 적용 가능한 인권경영지표개발에 활용함.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안)>,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 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2018
 - 이주민방송MWTB, <인종차별 예방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1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2010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2017
 - 경기문화재단,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2021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업기획을 담당하는 학예사 등과의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경영과 관련한 경기문화재단의 환경을 분석하였음.

〈표-1〉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인터뷰 참가자 명단

인터뷰 참가자	인터뷰 일시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운영총괄	7월 19일(월)
정춘옥 실학박물관 박물관교육 전시담당	
이미란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운영총괄	
진수정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운영총괄	
주진령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술담당	
안세웅 뮤지엄지원단 뮤지엄행정팀총괄	
정성희 경기도박물관 학예운영총괄	7월 22일(목)
구정화 경기도미술관 학예운영총괄	
최혜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운영총괄	
김호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교육담당	
박종강 뮤지엄지원단 행정계약파트총괄	
황록주 경영본부 IT홍보팀 업무총괄	8월 12일(목)

다. 노동조합 의견 수렴

- 문화 현장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 및 실행 관계자, 예술가 그리고 재단의 노동조합과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경영과 관련한 경기문화재단의 환경을 분석하였음.

2.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특징

가. 평가지표의 주요 특징

- 2020년 평가지표 개발시, 직장내 괴롭힘, 갑질 피해 등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최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함.
-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나 문화다양성 증진은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 수행과 깊은 연관이 있는바 이를 2020년 지표에서 신설하였으며, 2021년 지표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정보인권보호를 경기문화재단과 2021년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리하였음.
- 해외사업이 없는 경기문화재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재단으로서 국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음.
- 2020년에 신설했던 사업 분야의 지표를, 평가 이후에 받은 피드백과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지표의 목적에 충실하게 수정 보완하였음.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사업 중, 전시와 교육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경기문화재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영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부분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였음.
- 2021년 경기문화재단의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총 3개 부분, 14개 항목, 48개 지표, 226개 세부지표로 구성함.

나.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표

- 기관운영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와 비교해서 작성했던 2020년 지표를 기준으로 변화된 환경과 추가 보완해야 할 내용을 수정 보완함.
- 지원사업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지표’ (2019)와 비교하여 작성했던 2020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변화된 환경 및 보완점을 수정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부분 지표는 경기문화재단의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2021)’ 및 관련한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최초 설계함.

종합표 기관운영부문

〈표-2〉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부분 지표 수정사항

	항 목	주요 수정 및 보완사항 여부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수정 및 보완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수정 및 보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수정 및 보완
4	강제노동의 금지	수정 및 보완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수정 및 보완
6	산업안전 보장	수정 및 보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수정 및 보완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정 및 보완
9	환경권 보장	수정 및 보완
10	이용자 인권보호	수정 및 보완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 근절	수정 및 보완

종합표 주요사업 부분

〈표-3〉 인권영향평가 지원사업 부분 지표 수정사항

	항 목	주요 수정 및 보완사항 여부
12	지원사업	수정 및 보완
13	박물관 · 미술관 전시사업	신설
14	박물관 · 미술관 교육사업	신설

기관운영 부분 항목

〈표-4〉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부분 세부지표 수정사항

번호	항목	지표	수정 및 보완 여부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4 인권경영성과 1-5 구제절차 마련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수정 및 보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수정 및 보완
4	강제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금지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수정 및 보완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6	산업안전 보장	6-1 작업장 안전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수정 및 보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7-2 모니터링 실시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1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8-2 지식재산권 보호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2 환경정보의 공개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4 비상계획 수립	수정 및 보완
10	이용자 인권보호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10-3 이용자 정보인권보호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 근절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11-2 혐오표현의 근절	수정 및 보완

주요사업 부분 항목

〈표-5〉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부분 세부지표 수정사항

번호	항목	지표	수정 및 보완 여부
12	지원사업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수정 및 보완 신설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12-2 지원사업 공모준비	
		12-3 지원사업 공모심의	
		12-4 지원사업 운영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13-1 전시 기획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2 전시 관련 협력관계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14-1 교육 기획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2 교육 관련 협력관계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3.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과정

〈표-6〉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과정

일정	내용	세부내용
6월 1일 ~ 6월 7일	연구계약 및 착수	
6월 8일 ~ 6월 31일	사전연구	2020년 인권영향평가 분석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타 기관 인권영향평가 검토 해외 인권영향평가 검토 최근 관련 법 재개정 현황 파악 인권영향평가 관련 최신 동향 분석
7월 1일 ~ 7월 14일	인권영향평가 1차(안) 완료	연구 진행
7월 15일 ~ 8월 14일	1차(안) 평가 및 자문 진행	경기문화재단 사업부분 담당자 박물관 전시 및 교육 담당자 미술관 전시 및 교육 담당자 뮤지엄지원단 계약 담당자
8월 15일 ~ 8월 31일	인권영향평가 2차(안) 완료	연구 진행
9월 1일 ~ 9월 7일	인권영향평가 2차(안) 평가 및 자문 진행	경기문화재단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의견교환
9월 8일 ~ 9월 15일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완성	연구 진행
9월 16일 ~ 9월 30일	2021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진행	경기문화재단 기관운영 및 사업 담당 부서 (박물관·미술관 포함)
10월 1일 ~ 10월 14일	평가내용 관련 추가 의견 청취 및 자료 보완 과정	경기문화재단 경영, 사업 부서 및 노동조합 의견 청취 및 관련 내용 추가 자료 보완 과정 진행
10월 15일 ~ 11월 15일	평가 보고서 작성	연구진 평가 진행 및 보고서 작성
11월 15일 ~ 11월 30일	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발표회 진행

Ⅲ.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구성

Ⅲ.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구성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가.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 인권경영 실행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비롯하여 전 기관 차원의 인권경영 의지확인 및 합의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인권경영의 의지를 갖추고, 그 기초가 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공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7〉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 선언을 했다.	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정책선언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3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 내부의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4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임.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8〉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을 준거로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4	재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한다.	재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한다.
5	재단과 재단 소속기관 활동도 인권영향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재단과 재단 소속기관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다.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 설치 여부, 인권침해에 대한 기관의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9〉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3	재단은 인권경영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스템을 마련한다.	재단은 인권경영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4	재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재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5	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재단이나 재단 소속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재단이나 재단 소속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라. 1-4 인권경영성과

○ 인권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인권경영에 환류하는 것은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경영성과의 정기적인 확인, 공개 여부, 객관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0〉 1-4 인권경영성과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한다.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한다.
4	보고는 재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는 재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5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보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표와 문장으로 작성한다.
6	보고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은 거친다.	보고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은 거친다.
7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마. 1-5 구제절차 마련

○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절차 도입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1〉 1-5 구제절차 마련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5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2.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 2020년 평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1차적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 노동자 비차별 관련 규정, 제·개정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규정 및 최근 입법 추진 중인 평등법 등 고용상의 비차별과 관련된 최근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였음.
-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작년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관련 지표'에서 노동자의 소속부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 해당 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에 대해 추후 재단의 상황에 맞춰 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 및 운영규칙 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지표도 그대로 유지하였음.

가.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 고용영역(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휴게시간, 근로시간, 퇴직, 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에 있어 비차별 및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2〉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이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재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채용적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채용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3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결정 기준 및 임금 지급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결정 기준 및 임금 지급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6	재단은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8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문구 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표-13〉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9	재단은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재단은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 현재는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주체를 인사팀으로 정리하였지만, 고객 응대 노동자들을 안내데스크, 경영지원팀, 인사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향후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 고객 응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세분화하는 등의 지표 개선 작업을 검토할 수 있음.

〈표-14〉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0	재단은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노동자가 근로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노동자가 근로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 고용영역(채용, 노동, 임금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비차별 및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5〉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단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3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6	재단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재단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다.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근로에 있어 비차별 및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6〉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재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재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3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라.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 이주 배경 직원의 채용과 노동에 있어 비차별 및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7〉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재단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2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가.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8〉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한다.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한다.
2	재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19〉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다.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노동조합과의 실효적인 단체협상을 보장하고, 협상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20〉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재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2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재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재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4	재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 결정권이 있는 재단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재단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5	재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재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라.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노동조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21〉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재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재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재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4. 강제노동의 금지

가. 4-1 강제노동 금지

- 직원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 강제노동은 단지 물리적인 강제를 넘어 업무 시간 이외의 연락 등 실질적인 강제노동의 개념도 포함되는 개념임.

〈표-22〉 4-1 강제노동 금지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재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이나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5	재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6	재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재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재단을 그만둘 수 있다.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재단을 그만둘 수 있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급망(supply chain) 등 기관과 법적, 경영적 관계를 맺는 조직들의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기관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23〉 4-2 재단 소속 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재단은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재단은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3	인신매매, 채무 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인신매매, 채무 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가.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 부당하게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와 통일시키기 위해 대제목의 문구를 '연소자 노동의 금지'로 수정함.

〈표-24〉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표-25〉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재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u>15세미만의</u> <u>자를 고용하지 않는다.</u>	재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 단, 해당 국가와 국내연소자 고용금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

- 해외에서 활동할 경우, 그 국가의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그 국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연소자 노동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표-26〉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재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재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5	재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재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	---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아동 인권 보호 및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준법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27〉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한다.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추가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추가 가능).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재단은 연소자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재단은 연소자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7	재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재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8	연소자들의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연소자들의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표-28〉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9	[신설]	연소자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

- 경기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술·공연사업에 참여하는 연소자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신설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등 연소자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침의 취지와 맥락이 같음.
- 재단의 사업 특성상 재단 운영차원에서 연소자를 직접 고용하는 일은 없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나 TEENS 등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는 연소자 문화예술인이 늘어나는 바, 추후 지속적인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며, 필요시 사업운영에서의 지침으로 변경하거나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함.

6. 산업안전 보장

가. 6-1 작업장 안전

○ 근무환경의 안전이 항시 보장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29〉 6-1 작업장 안전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2	재단의 비상 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재단의 비상 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3	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및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4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재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재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30〉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임산부, 장애인 및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2	재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 시키지 않는다.	재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 시키지 않는다.

3	임신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신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 등이 재단 및 재단 소속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장애인 등이 재단 및 재단 소속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다.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장비 및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3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재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표-32〉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재단은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산업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주체가 재단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향후, 인권영향평가에서는 해당 지표의 노동자를 노동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표-33〉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5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라.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34〉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가.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 기관의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35〉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및 지원사업 대상 등의 협력기관과 단체 등(이하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재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및 지원사업 대상 등의 협력기관과 단체 등(이하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2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3	재단은 모든 계약에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재단은 모든 계약에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4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7-2 모니터링 실시

- 기관의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부여 등의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표-36〉 7-2 모니터링 실시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표-37〉 7-2 모니터링 실시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재단은 <u>모니터링 결과</u>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

○ 모니터링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다.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시설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 인권침해 방지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표-38〉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재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2	회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재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3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 의무를 <u>미이행 시</u>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 의무를 <u>이행하지 않을</u>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4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가.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 기관이 지역주민 인권을 존중을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임.
- 이 부분의 지표는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유형의 재산, 즉, 동산,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된 지표임.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운영 특성 및 평가의 내실화, 평가담당자의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목차 제목을 수정하였고 인권영향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지역주민의 인권존중과 보호의 내용은 관련 기관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현지의 원주민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내용에서 출발한 것임.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지표는 향후, 재단의 사업의 특성, 범위, 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인권영향평가 사업의 고도화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인권의 내용을 확장할 수 있음.

〈표-39〉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토지 및 건물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 및 건물의 <u>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u> 협의한다.	재단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u>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u> 협의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관련 법령에서 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3	재단은 토지 및 건물 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재단은 토지 및 건물 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재단은 <u>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u>	재단은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확보하지 않는다.

5	재단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재단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6	재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재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제공한다.

- 문구수정 외의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전액 출연한 공공기관으로서 주로 경기도가 소유주인 토지와 건물을 위탁운영 하는 형식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나. 8-2 지식재산권 보호

- 목차 제목을 「지식재산권법」상의 용어인 지식재산권 보호로 변경함.

〈표-40〉 8-2 지식재산권 보호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재단은 타인의 지식재산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재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재단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양수 및 이용허락 등을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모든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이용허락 등을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4	[신설]	재단은 재단이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사업운영에서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다.
---	------	---

- 문화예술인 및 지원사업참여자 등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많이 다루는 재단운영의 특성에 맞추어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지침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함.
- 8-2의 2번 지표의 경우, 삭제요청이 있었으나,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인지 여부는, (1)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특정 지식재산의 생산자를 앞에도 국제사법적으로 법률의 공백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특정한 지식재산이 특허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3) 지식재산의 생산자가 사회적 소수자라서 관련 지식재산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지표임으로 만일, 재단에서 관리하거나 관여하는 지식재산권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매뉴얼에 실무 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9. 환경권 보장

가.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기업이나 기관이 경영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표-41〉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2	재단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재단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재단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4	재단은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재단은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재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재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9-1-3항 문구추구 이외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9-2 환경정보의 공개

○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표-42〉 9-2 환경정보의 공개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공급자, 시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공급자, 시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일부 문구 추가 이외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적용함.

다.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환경은 문제가 생기면, 원상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표-43〉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u>환경문제 발생의 예방을 원칙으로 삼는다.</u>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 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 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환경 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환경 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 9-3-1은 예방적 필요를 좀 더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9-3-4는 문구 일부 수정함. 이외 사항은 2020년 지표와 동일함.

라. 9-4 비상계획 수립

○ 환경피해 발생 시에 대한 적절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표-44〉 9-4 비상계획 수립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환경 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환경 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재단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재단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재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재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4	재단은 비상사태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재단은 비상사태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5	재단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재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적용함.

10. 이용자 인권보호

가.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기업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표-45〉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 서비스 (이하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 서비스 (이하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3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방법, 가격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방법, 가격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5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나. 10-2 제품 및 서비스 결함 조치

○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에 대한 사항으로 결함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임.

〈표-46〉 10-2 제품 및 서비스 결함 조치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를 조속히 시정한다.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를 조속히 시정한다.
2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실을 당하였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한다.

○ 문구 조정 이외 특별한 변경사항 없음.

다.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시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표-47〉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재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u>이해관계자</u>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재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u>이해관계자</u>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3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u>이해관계자</u>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4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u>이해관계자</u>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u>이해관계자</u> 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5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u>이해관계자</u> 정보는 <u>이해관계자</u> 가 동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u>이해관계자</u> 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재단의 시설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에서는 기존의 '소비자'에서 '이용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나, 2021년에는 이를 다시 '이해관계자'로 변경하였음.
- 2021년 하반기 기록경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관계자의 구분 없이 모든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임.
- 이용자의 범위를 정의하면, '재단의 서비스(온라인 서비스 포함)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관람객, 그리고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재단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 등이 있을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란 재단과 함께 협업하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협력 업체, 협력 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이 지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인권의 범위와 지표의 취지에 비추어, 이용자라는 표현보다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재의 내용에는 일부 맞지 않지만, 재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지표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포괄하도록 수정함.
- 다만 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정보의 통합관리와는 별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해관계자(예술인 및 협력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가 다시 업무별로 나누어진다면, 위 인권영향평가 지표도 다시 분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 지표에서는 주로 정보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번 항목의 제목을 이용자의 '정보인권'으로 변경하여 이 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음.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은 인권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시안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0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신설하여 포함하였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제 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의해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도 그 의무를 지고 있음.
- 특히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증진은 공공기관의 의무로서뿐만 아니라, 기관의 설립 목적이 되어야 함.
- 또한, 혐오표현의 근절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임.

가.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표-48〉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했다.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했다.
2	재단은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단은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보호·증진된 사업 및 기획을 재단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재단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4	재단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적 시도와 기획을 권장하기 위해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포상하고 사례로 공유하고 있다.	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적 시도와 기획을 권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의 포상을 제공하고 사례로 공유하고 있다.

- 일부 문구 수정 이외 특별한 변경 사항 없이 2020년 지표를 적용함.

나. 11-2 혐오표현의 근절

〈표-49〉 11-2 혐오표현의 근절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천명했다.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천명했다.
2	재단은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3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조사와 대응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조사와 대응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4	혐오표현 발생 시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혐오표현 발생 시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함.

12. 지원사업

- 지원사업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기업)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영역에 지원사업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9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함.
- 2020년 지원사업 지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예시로 개발되었으며, 2021년 또한 동일 사업으로 평가지표를 보완·수정하였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록함.
- 2020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중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총 4개 영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지원사업 운영,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으로 구성되었으나, 2021년 평가지표에서는 공모신청 및 선정의 단계를 공모 준비와 공모 심의의 단계로 구분하여 총 5개 영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 준비, 지원사업 공모 심의, 지원사업 운영,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으로 구성함.
- 또한, 2020년 지원사업 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평가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문구의 수정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침과 제도, 정책 등의 요소 등을 가장 폭넓은 규정에 해당하는 제도로 일원화함.

〈표-5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영역 비교

구분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대상 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지표 구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4개)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4개)
	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10개)	지원사업 공모 준비 (4개)
		지원사업 공모 심의 (6개)
	지원사업 운영 (5개)	지원사업 운영 (4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5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3개)
	총 24개 지표	총 21개 지표

가.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표-51〉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지침이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u>제도가 있다.</u>

- 재단의 지원사업은 예술인·예술단체가 예술활동을 창작 또는 발표하며, 이를 통해 도민을 포함한 관객에게 문화향유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재단의 지원사업 계획수립시 문화향유자 중 사회적 소수자나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단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표-52〉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과정에서 기초단위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참여자(예술가·예술단체), 수혜자(도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지침이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협력 관계에 있는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 문화향유자의 <u>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u>

- 경기문화재단의 평가대상 사업은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사업참여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참여자를 명시하고, 문화향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53〉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자(예술가·예술단체)의 정보 접근성 정도를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예술가들의 정보 접근 역량 차이를 고려한, <u>평등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도가 있다.</u>

-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정보 접근권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 계획이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소외당하는 대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함.
- 2020년 지표에서는 지원사업 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의 세부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2021년 지표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의 전체 과정으로 포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표-54〉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4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4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세부계획 및 지침 확정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다.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2020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2021년에도 연속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지원사업의 계획은 예술인·예술단체 및 문화향유자가 관계된 형태의 사업으로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년도 재단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나.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표-55〉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심의과정에서 사업참여자(예술가·예술단체)에게 차별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표현과 내용이 있는지 점검한다.

-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구축을 평가하기 위해 2020년에 설계된 평가지표를 2021년 소폭 수정함.
- 2021년에는 지원사업 신청서류에서의 인권 침해 유발 표현과 내용에 대한 점검으로 지표의 적용 단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표-56〉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신설]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와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본 지표는 2021년 신설된 것으로, 재단이 지원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이해도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의미함.

〈표-57〉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 관련 계약에 대해 <u>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u>

- 2020년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며,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사업운영 관련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함.

〈표-58〉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4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4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 대상인 예술가·예술단체가 물리적 환경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심의절차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예술가 중 <u>이동이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정도의 장애나 제약이 있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u>

- 2020년 지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이동성 및 의사소통 등 물리적·신체적 특징이 공모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다.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표-59〉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인권 침해를 유발하였거나 이에 연루되어 있는 사업참여자(문화기획자, 예술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 또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 및 예술가 중 <u>인권 침해를 유발하였거나 연루된 자를 지원신청 또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u>

- 2020년 지표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인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의 공모신청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참여자 및 심의 대상자인 예술가·예술단체를 명시하였으며, 2021년에도 해당 방향성을 유지함.

〈표-60〉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에 관여하는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의 구성에서 특정 사회적 소수자(성별, 연령, 지역 등)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u>성별·연령·지역 등 세부 요건을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u>

- 2020년 지표에서는 평가위원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무 포함을 명시하였으나, 2021년 지표에서는 재단의 지원사업 평가위원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통해 평가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평가함.

〈표-61〉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공정심사에 위배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예시를 포함한 사전 지침을 전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는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이 공정심사에 위배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지침을 배포하고, 위반 시 평가에서 배제하는 <u>제도가 있다.</u>

- 2020년 지표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이 예술가·예술단체에 공정심사에 위배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여, 심의 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제거해야 함을 의미함.

〈표-62〉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4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4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평가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u>제도가 있다.</u>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지표에서는 평가 운영지침을 확보해야 함을 평가하였으나, 2021년 지표에서는 제도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표-63〉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5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5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예술가·예술단체가 심의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 및 지침이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절차와 방식에 대해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2021년 평가지표는 지원사업 심의절차 및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해당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표-64〉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6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6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에 대해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공모 심의 지표 5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 공모 심의에서 이의제기 제도 보유 여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 수렴을 해야 함을 의미함.

라. 12-4. 지원사업 운영

〈표-65〉 12-4 지원사업 운영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사업운영 전반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및 지침이 있다.	재단은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2020년 지표에서 사업운영 전반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나 소재를 점검해야 함을 평가하였으나, 2021년 지표에서는 사업운영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에서도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함.

〈표-66〉 12-4 지원사업 운영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종사자가 인권 침해를 유발하였거나 이에 연루된 경우 영향력 범위 안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u>제도가 있다.</u>

- 2020년 지표에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종사자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으며, 2021년 지표에서는 인권 침해 유발 및 연루된 경우 사업 선정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를 명시함.

〈표-67〉 12-4 지원사업 운영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예술활동 사업을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가 지원사업으로 개최되는 <u>공연·전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u>

- 정보 접근성 이외에도 문화예술활동(공연·전시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의한 지역주민 참여의 차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2020년 지표를 유지함.

〈표-68〉 12-4 지원사업운영 4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4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운영과정에 기초단위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참여자(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u>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예술단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u>

- 지원사업 운영 전체 과정에서 고충 처리 접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협력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의미함. 특히, 기초단위 사업협력기관을 도내 기초문화재단으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마.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표-69〉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1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결과보고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인권영향평가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2020년 지표와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재단의 사업운영에 환류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70〉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인권성과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보상체계에 반영한다.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 성과 달성에 기여한 재단의 사업담당자 및 예술가·예술단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2020년 지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지원사업에 환류하기 위해 인권성과를 지원사업 참여 단체에 보상하는 것을 평가하였으나, 2021년 지표에서는 재단의 사업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서 인권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표-71〉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3

번호	2020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3	신설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 2021년 평가지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를 통한 보상과 더불어 인권증진 성과 미달성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환류를 강화하였음.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 경기문화재단은 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총 7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기능인 전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표를 설계함.
- 본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으로 지표 구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의 주요 범주와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발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함.
-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영역은 크게 4개 범주로 구성되며, ‘전시기획’,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전시 홍보 및 운영’,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로 구성됨.

〈표-72〉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지표 영역

지표 영역	세부지표 수
전시기획	3
전시 관련 협력 관계	5
전시 홍보 및 운영	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4
합계	총 16개 지표

가. 13-1 전시기획

〈표-73〉 13-1 전시기획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시 전시내용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전시기획은 총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 전시기획 시에는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모두 고려하고 전시내용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평가함. 또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이 전시기획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함.

나.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표-74〉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공모사업 진행 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접수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5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전시 관련 협력 관계는 전시를 위해 외부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 및 단체와 경기문화재단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며, 총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 전시 관련 협력 관계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참여 예술가, 전시 설치에 관련된 외부협력자 등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내용에서 인권에 관련된 요소를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됨.
- 특히,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과 외부협력자(개인 및 업체·단체)가 인권 침해를 유발·연루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마지막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상호정보교류를 포함하여 지표를 구성함.

다.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표-75〉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홍보 및 전시 운영에서 소외되는 향유자가 없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홍보활동과 실제 전시 운영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들로 총 4개의 지표를 구성함.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전략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기능을 위한 기본 기능이며, 전시홍보물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등 홍보의 과정과 내용에서의 인권을 확인함.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운영시에 필요한 외부 인력(도슨트, 자원봉사자, 보안 인력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자료/매뉴얼을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전시 운영에서의 인권 영향을 평가함.

라.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표-76〉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연구결과물(보고서, 발간물 등) 및 전시도록 등 전시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3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 전시결과 보고 및 환류는 총 4개 지표로 구성함.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결과물은 연구 결과보고서, 전시도록 등이 있으며, 해당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시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함.
- 전시 결과보고서에서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하고, 인권증진성과를 명시한 후 이를 달성한 관련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와 미달성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권증진 성과 및 과제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포함함.

14.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사업

- 경기문화재단은 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총 7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기능인 교육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표를 설계함.
- 본 지표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사업의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표 구성 시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의 주요 범주와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발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함.
-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영역은 크게 4개 범주로 구성되며, '교육기획', '교육 관련 협력 관계', '교육 홍보 및 운영',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로 구성됨.

〈표-77〉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지표 영역

지표 영역	세부지표 수
교육기획	3
교육 관련 협력 관계	5
교육 홍보 및 운영	5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4
합계	총 17개 지표

가. 14-1 교육기획

〈표-78〉 14-1 교육기획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교육기획은 총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 교육을 기획할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교육에 접근성이 낮은 사람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평가함.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이 교육을 기획할 시 반영되는지를 확인함.

나.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표-79〉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공모사업 진행 시, 참여하는 교육 강사 및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접수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5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활동 진행과정에서 협력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교육 관련 협력 관계는 교육을 위해 외부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하며, 총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 교육 관련 협력 관계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교육 강사 및 예술가 등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내용에서 인권에 관련된 요소를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됨.
- 특히,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과 외부협력자(개인 및 업체·단체)가 인권 침해를 유발/연루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마지막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상호정보교류를 포함하여 지표를 구성함.

다.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표-80〉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홍보 및 운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홍보활동과 실제 교육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들로 총 5개의 지표를 구성함.
-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홍보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기능을 위한 기본 기능이며, 교육홍보물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등 홍보의 과정과 내용에서의 인권준수 여부를 확인함.
-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동일 부분의 전시관련 지표에는 없는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었음, 이는 박물관·미술관이 교육 부분을 기획 및 실행할 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지표임.
-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운영시에 필요한 외부 인력(교육강사, 자원봉사자, 보안 인력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자료/매뉴얼을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교육 운영에서의 인권 영향을 평가함.

라.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표-81〉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번호	202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1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2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3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4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 교육결과 보고 및 환류는 총 4개 지표로 구성함.
- 박물관·미술관의 교육결과는 교육 결과 관련 제작 결과물 또는 자료집 등이 있으며, 해당 결과물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함
- 교육 결과보고서에서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하고, 인권증진성과를 명시한 후 이를 달성한 관련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와 미달성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권증진 성과 및 과제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포함함.

IV. 종합 평가 결과

IV. 종합 평가 결과

1. 종합 평가 점수 및 의견

가.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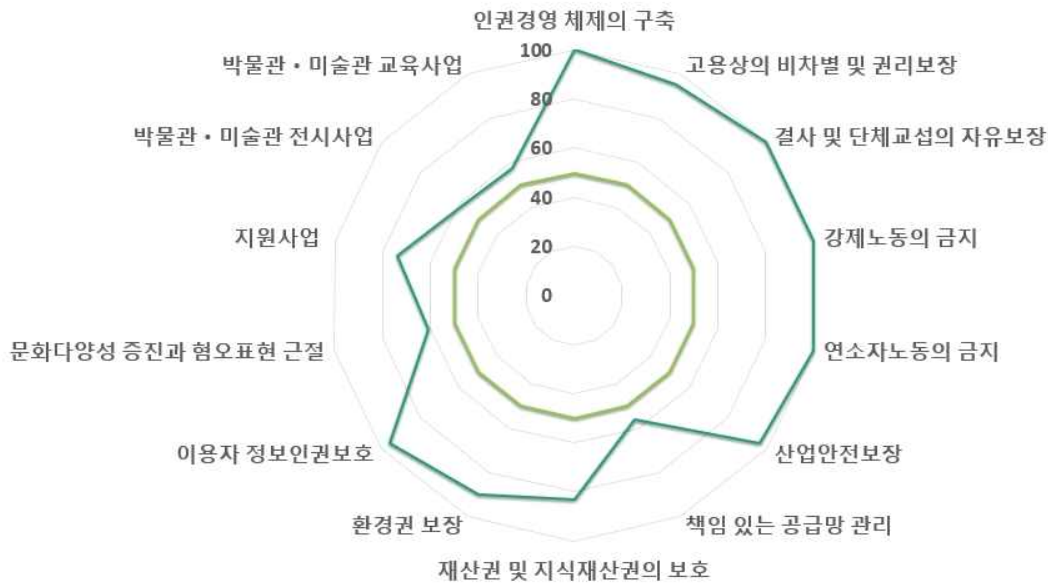
- 2021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부분은 89.0점, 지원사업 부분은 73.8점, 박물관·미술관의 사업부분은 58.1점으로 산출됨.
- 2020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기관운영 부분은 2020년 87.7점에서 1.3점 상승하였으며, 지원사업 부분은 66.7점에서 7.1점 상승하였음.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사업 부분 2021년 신설되었음.



[그림 1]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2020년과 2021년 평가결과 비교)

- 기관운영 부분과 사업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기관운영 부분의 경우 일부 지표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출된 점수보다 더욱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사업 부분에서도 큰폭으로 평가 점수가 상승되었으며, 여러 지표에 걸쳐 2020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인경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연소자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고,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일부 수정 권고된 지표의 개선도 이루어졌음.

- 2020년 ‘현지 주민의 인권보장’에서 문화재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바뀐 영역과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호’, ‘이용자 인권보호’ 그리고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났으며, 지표상 드러난 몇 가지의 보완사항이 있으나,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박물관·미술관의 사업 운영은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지원사업 부문에서 드러난 몇 가지 보완사항과 기관운영 부문의 보완사항에 대해 향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평가 첫해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평가에 대한 분석 이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2]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나. 기관운영 및 지원사업 부분 평가 점수 산출방식

○ 점수 산출 방식

$[(\text{*항목 수} \times 2) \div \{(\text{'예' 체크 수} \times 2) + (\text{'보완필요' 체크 수} \times 1)\}] \times 100 = \text{점수}$

*항목 수 = '해당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1) 기관운영 부분 평가 점수

〈표-82〉 기관운영 부분 평가 점수

번호	항목	평가 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0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95.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0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100.0
6	산업안전 보장	96.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6.3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3.3
9	환경권 보장	90.0
10	이용자 정보인권보호	96.2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 근절	61.1
기관운영 부분 합계		89.0

2) 주요사업 부분 1: 지원사업 평가점수

〈표-83〉 지원사업 부분 평가점수

번호	항목	평가점수
12	지원사업	73.8
지원사업 부분 합계		73.8

3) 주요사업 부분 2 : 박물관·미술관 평가점수

〈표-84〉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사업 부분 평가점수

번호	항목	평가점수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58.4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57.7
박물관·미술관 부분 합계		58.1

4) 기관운영 부분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85〉 기관운영 부분 세부지표 평가결과

번호	항목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합계 (해당 없음 제외)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0	0	0	0	30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19	2	0	0	1	2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3	0	0	0	3	13
4	강제노동의 금지	8	0	0	0	3	8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4	0	0	0	11	4
6	산업안전 보장	13	1	0	0	3	1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5	1	0	2	8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2	1	0	0	8	3
9	환경권 보장	9	0	1	0	8	10
10	이용자 정보인권보호	12	1	0	0	0	13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 근절	3	5	1	0	0	9

5) 지원사업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86〉 지원사업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번호	항목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합계 (해당 없음 제외)
12	지원사업	13	5	3	0	0	21

6) 박물관·미술관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표-87〉 박물관·미술관 부문 세부지표 평가결과

번호	항목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합계 (해당 없음 제외)	
13	박물관 · 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도박물관	5	2	4	0	5	11
		경기도미술관	5	2	4	0	5	11
		백남준아트센터	6	2	3	0	5	11
		실학박물관	5	2	4	0	5	11
		전곡선사박물관	6	2	3	0	5	1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6	2	3	0	5	11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5	2	4	0	5	11
14	박물관 · 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도박물관	5	3	4	0	5	12
		경기도미술관	5	2	5	0	5	12
		백남준아트센터	6	2	4	0	5	12
		실학박물관	6	2	4	0	5	12
		전곡선사박물관	7	2	3	0	5	12
		경기도어린이박물관	6	3	3	0	5	12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5	3	4	0	5	12

2. 기관운영 부분 의견

- 2020년에 권고된, 인권경영성과에 대한 직원대상 인센티브, 외부 구제절차 관련 사항 그리고 인권경영 제도화 내부규정 등이 모두 개선되었음.
-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항목에서는 투명한 소통 지속이 필요하며, 특히,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부 지침 추진 권고, 원격지 근무자 지원에 대해 개선 계획이 필요함.
- 장애인 등이 재단 및 소속기관내에서 이동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단 시설 내 경사로 및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필요함.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기관 및 단체에 인권보호 의무 요구 및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함.
- 지식재산권 관리 종합 지침 및 기록경영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통한 적극적 보호 시행이 필요함.
-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가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 예방적 역할과 재단 직원 대상 환경교육이 필요함.
- 재단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음.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언어로 소외된 사람 없이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야하며, 자발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포상 규정이 필요함.

3. 지원사업 부분 의견

- 지원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침을 통해 사업대상자 및 사업운영 방식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내용에 양식으로 포함하여 진행이 필요함.
- 지원사업 공모 준비 단계에서 계약에 관련하여 예술가의 이동성과 의사소통 편의성을 고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함.
- 지원사업 공모 심의 단계에서, 인권 침해 유발 및 연루자에 대한 제재 및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보장,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을 운영규칙에 명시 등 개선이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에서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 명문화 필요함.
- 공연·전시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의 정보 접근성 및 이동성 고려 필요함.
- 사업 결과보고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예술단체의 인권증진 성과를 결과보고에 포함하고, 미달성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한 재단 담당자, 예술가·예술단체를 보상함으로써 긍정적 환류 강화 노력이 필요함.

4. 박물관 · 미술관 사업 부분 의견

- 박물관 · 미술관은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반영하여 전시기획의 내용 및 주제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전시와 교육시 외부 협력자의 인권증진과 이들의 인권 침해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해 계약 시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 작성 등 준수 노력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함.
- 전시 및 교육의 홍보 및 운영단계에서는 홍보물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및 소재 포함 여부 검토 등)를 확인하는 제도인 경영기획실의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기반으로 더욱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함.
- 박물관 · 미술관 외부협력자들의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자료 및 매뉴얼 등 마련이 필요함.
- 박물관 · 미술관 전시사업의 결과보고 및 환류 단계는 2021년 1회차 평가임을 고려하여,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으나, 차기년도부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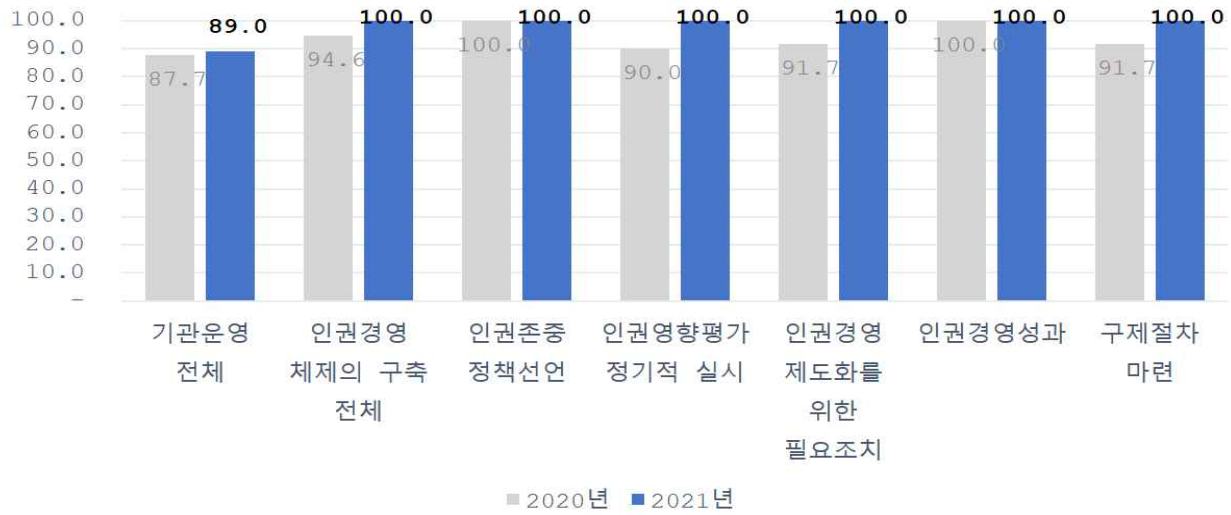
V. 기관운영 부분 평가 결과

V. 기관운영 부분 평가 결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0점으로 산출됨.
- 2020년 94.6점에서 5.4점 상승되었음.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는 총 5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인권경영성과' 그리고 '구제절차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존중 정책 선언' 지표는 6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는 5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는 6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인권경영성과' 지표는 7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구제절차 마련' 지표는 6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2021년의 경우,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들을 상당 부분 개선하여 인권경영 정책의 정기적 검토, 인센티브 부여 제도 마련, 외부 구제절차 마련 등의 세부항목들이 보완됨.



[그림 3]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88>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6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6				
1-4	인권경영성과	7				
1-5	구제절차 마련	6				
합계		30				

나. 지표별 의견

1)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 경기문화재단은 2019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채택된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을 통해 인권존중 정책을 선언하였음. 해당 인권정책선언은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노동조합의 검토를 거쳤음.
- 인권정책선언은 국내외 기준과 규범에서 정하는 주요 인권 의제들을 포괄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히 재단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인권 현안을 포함하였음.
- 인권정책선언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직원 및 관련 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전달되었음. 2021년 현재 인권정책선언은 홈페이지에서 접근이 쉬운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함.

-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선언 내용 검토를 완료하고 2021년에 인권경영 운영규칙을 개정함.

〈표-89〉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정책선언을 했다. •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2)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경기문화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27조(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준과 규범에서 정하는 주요 인권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인권활동가, 공익변호사, 문화정책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관련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함.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함.
- 재단 외 재단 소속기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표-90〉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분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한다. 재단과 재단 소속기관 활동도 인권영향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3)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재단은 2021년 현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정, 인권경영선언문 발표,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인권감사관)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였음(인권감사관, 부서별 업무분장 규칙 제3조).
- 재단은 2021. 7. 22. 취업규정을 개정하여 인권경영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개별적인 근거를 마련함[취업규정 제53조(포상)].
- 재단은 노사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인권침해 등을 위한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 또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설치 등 일반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취업규정 제64조(고충처리),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13조(구제조치),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재단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재단이나 재단 소속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재단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 소속기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권영향평가는 사업부분에서 별도로 평가함.

〈표-91〉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재단은 인권경영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재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이나 재단 소속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4) 1-4 인권경영성과

- 재단은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 인권경영 성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등).
-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인권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경영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인권경영성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됨.
- 보고내용은 인권경영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홈페이지의 인권자료실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지표를 반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는 2021년 인권영향평가 보고를 하고 있다고 평가됨.

〈표-92〉 1-4 인권경영성과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4 인권경영성과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한다. 보고는 재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표와 문장으로 작성한다. 보고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다.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5) 1-5 구제절차 마련

- 재단은 앞서 언급한 고충 처리 창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구제절차의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고 평가됨.
- 구제절차는 홈페이지 및 내부업무포탈 등에 공개하고 있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고 평가됨.
-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신속하게 통보됨[인권경영 운영규칙 제3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제5항].
- 피해자가 재단이 마련한 구제절차 외의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는 내부 규정을 신설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29조(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제3항].
- 구제절차에 따라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평가됨[인권경영 운영규칙 제35조(시정과 조치)].

〈표-93〉 1-5 구제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5 구제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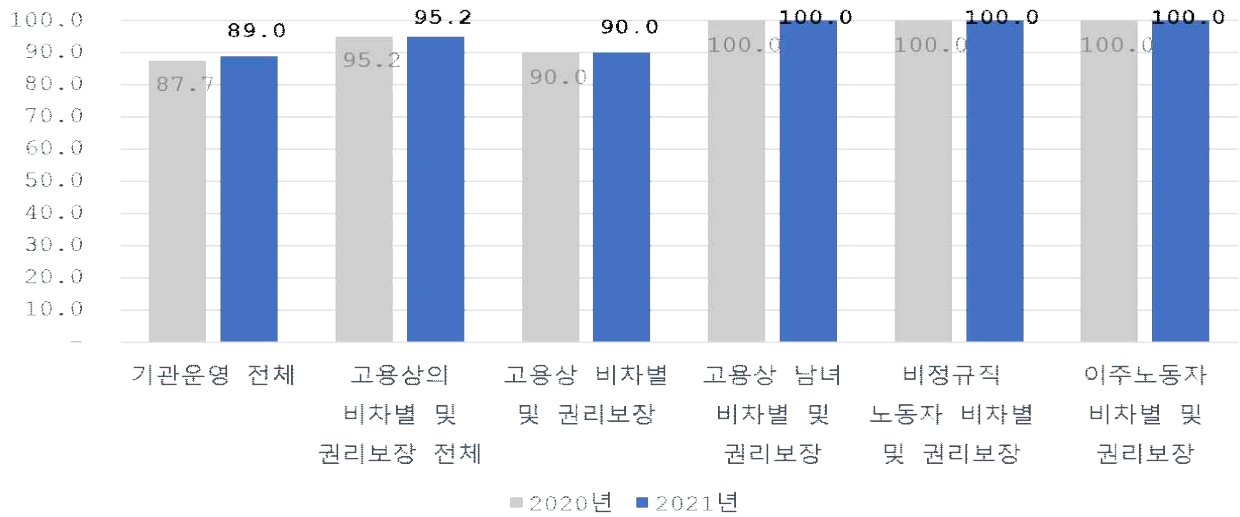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재단은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하여 2021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는 고민이 필요함.
- 인권경영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관심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고충처리제도와 관련하여, 다원화되어있는 인권침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95.2점으로 산출됨.
- 2020년 95.2점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및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에서 10개의 세부지표 중 2개의 세부지표가 ‘보완필요’로 평가되었고, 이는 2020년 영향평가 이후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기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이에 따라 90점으로 산출되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21년 말에 진행할 단체 협약시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2020년에 비해 재단 경영진 측의 지표평가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이 큰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의 경우 6개의 세부지표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의 경우 3개의 세부지표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의 경우 3개의 세부지표 중 2개의 세부지표가 ‘예’로 1개의 세부지표가 ‘해당 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위 모든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측이 큰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4]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94> 2.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2.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8	2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6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3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2				1
합계		19	2			1

나. 지표별 의견

1)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 재단은 채용시 지원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기준 또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 노조와의 단체 협약으로 '인사상 차별행위 금지의무'를 명문화하였음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41조(인사원칙), 제43조(승진), 제59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제61조(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제62조(정년·퇴직에서의 차별금지), 제70조(복지후생의 원칙), 제72조(복지후생시설), 제82조(차별행위금지)].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임금결정 기준 및 임금 지급에서 차별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대해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직제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가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있었으나,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조의 상이한 의견이 없었기에 해당 항목을 ‘예’라고 평가하기로 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임금 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및 복귀후생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복귀후생제도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2020년 ‘원격지 지원’ 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조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음.
 - 해당 문제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지적되었으나 2021년 영향평가에서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항목은 ‘보완 필요’로 평가하기로 함.
 - 그러나 원격지수당에 대해서 재단은 노조와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검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관사지원의 경우 단체 협약시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여 2022년에는 해당 항목의 개선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인사관리, 승진 등의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02호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칙”).
- 재단은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하였으나, 폭언, 폭행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하는 내부 규정 및 지침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문제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지적되었으나 2021년 영향평가에서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항목은 ‘보완 필요’로 평가하기로 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조치 및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 인권영향평가지 해당 항목의 개선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차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표-95〉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이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채용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결정 기준 및 임금 지급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 조건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재단은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노동자가 근로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 재단은 채용 공고문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직무와 무관한 기준 또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도 인사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명문화하였음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41조 (인사원칙), 제43조(승진), 제59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제61조(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제62조(정년·퇴직에서의 차별금지), 제70조(복지후생의 원칙), 제72조(복지후생시설), 제82조(차별행위금지)].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남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10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남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10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성별을 이유로 임금 외의 복리후생제도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남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10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성별을 이유로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남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10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성별을 이유로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남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10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96〉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3)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07호 “경기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기간제노동자의 연봉 및 복리후생비를 재단 연봉제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65호 “경기문화재단 연봉제 운영규정”),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인사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명문화하였음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41조(인사원칙), 제43조(승진), 제59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제61조(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제62조(정년·퇴직에서의 차별금지), 제70조(복지후생의 원칙), 제72조(복지후생시설), 제82조(차별행위금지)].
- 이에 따라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편익, 임금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표-97〉 2-3 비정규직 노동자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재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익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4)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인사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명문화하였음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41조(인사원칙), 제43조(승진), 제59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0조(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제61조(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제62조(정년·퇴직에서의 차별금지), 제70조(복지후생의 원칙), 제72조(복지후생시설), 제82조(차별행위금지)].
- 이에 따라 재단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종교,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98〉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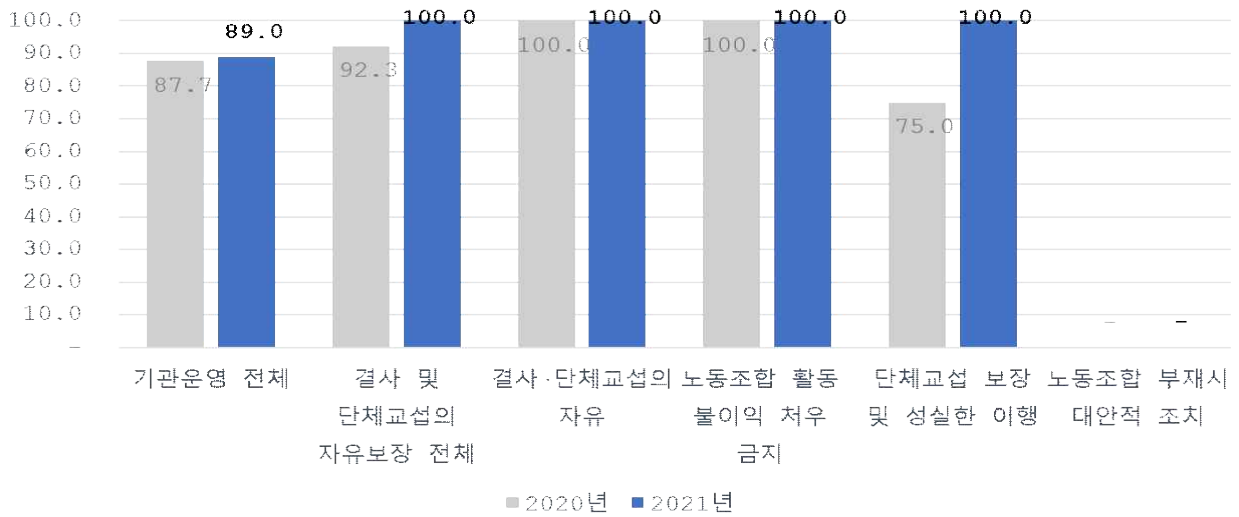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재단의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앞으로도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과 투명한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속유지할 것을 권고함.
- 특히, 2020년에 지적되었지만 2021년 인권영향평가까지 개선되지 못한 원격지 근무자 지원의 문제와,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았을 시 대처에 대한 내부 지침이 없는 문제에 대해 예정된 개선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권고함.
- 나아가 원격지 근무자 지원에 있어서 차별문제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가능한 노동조합 측과의 소통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지적된 차별사항을 개선하기를 권고함.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0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2020년 92.3점에서 7.7점 상승되었음.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결사·단체교섭의 자유’지표의 경우 4개의 세부지표가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지표가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지표 중 4개의 항목이 ‘예’로, 1개의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지표의 경우, 2개 세부지표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 2020년과 동일하게 재단 측과 노동조합 측이 모두 이견 없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및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에 대한 긍정 의견을 제출하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을 위한 재단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 당시, 단체교섭의 협상과정에서 재단 대표 등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 노조설명회, 인사발령, 급식비 지급 등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1년 단체교섭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있는 경영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고, 해당 세부지표에 대한 재단의 평가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견이 없었음.



[그림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9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1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
합계		13				3

나. 지표별 의견

1)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에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12호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됨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제7조 (조합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 제10조(시설편의 제공)].
- 재단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취업규정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취업규정 제105조(노사협의회)], 정기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자의 대표와 정기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100〉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한다. • 재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에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12호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취업규정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제7조 (조합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 제10조(시설편의 제공)].
- 이에 따라 재단은 노동자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또는 사업주의 위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표-101〉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예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재단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평가됨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91조 (교섭원칙), 제92조 (교섭요구), 제93조 (교섭의무), 제102조(재교섭)].
- 또한, 재단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등 [2018.5.16. 체결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경기문화재단 단체협약서 제97조 (자료제출)] 노동자 대표에게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해고를 한 사례가 없어,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였음.
- 재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일상적인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경영본부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 당시 원만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가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진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동조합 측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재단은 2021년 임금단체협상 진행에 경영진 대표자로 경영본부장이 1차 회의에 참석, 단체 협약 시 협상위원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가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함.
- 재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측은 재단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표-102〉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재단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재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 해당 지표는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재단의 조치를 평가하는 목적인데, 재단 내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 및 활동하고 있어 평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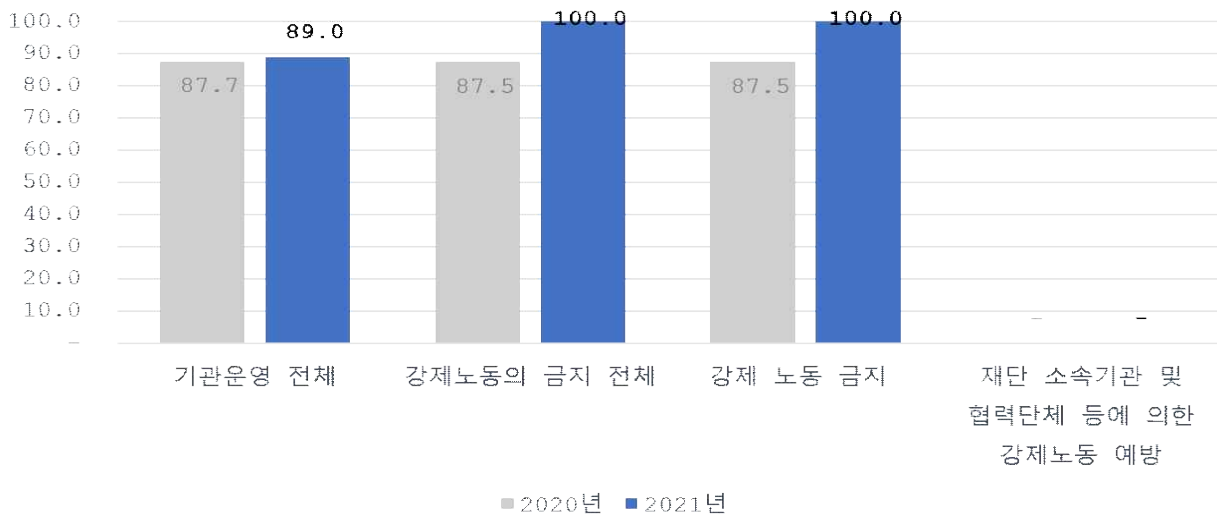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재단은 대체로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020년 지적되었던 사항(단체협상 시 의사결정권 있는 경영진의 참여,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개선하였는 바, 앞으로도 지속유지할 것을 권고함.
-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이 특별한 문제사항을 지적하진 않았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 단체협약이 계속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4. 강제노동의 금지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강제노동의 금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0점으로 산출됨.
- 2020년 87.5점에서 12.5점 상승됨.
- '강제노동의 금지'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2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의 금지',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강제노동 금지' 지표의 경우, 8개의 세부지표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표의 경우, 3개의 세부지표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 대체로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재단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 당시 초과 노동 등 금지를 위한 재단의 의무 이행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2021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관행에서도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됨.



[그림 6] 4.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03〉 4.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4. 강제노동의 금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1	강제노동 금지	8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합계		8				3

나. 지표별 의견

1) 4-1 강제노동 금지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 규칙 제312호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취업규정 제42조(계약), 취업규정 제43조(근로계약기간)]
- 재단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 측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견을 표하지 않아, 현재 재단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한 초과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평가됨.
 - 초과근무에 대한 직원의 사전 동의를 명시하고 초과근무 거부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함께 [단체협약 제32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2021년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시 필수교육 커리큘럼으로 의사에 반하는 초과 노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제로 담당자를 통해 주말에 의사에 반한 현장출근이 줄어들었고, 의사에 반한 초과 노동을 강제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고,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평가됨.
- 재단 측은 노동자가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고 평가하였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견을 표하지 않아, 현재 재단은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일부 부서에서 단체 카톡방 개설 등을 통해 퇴근한 노동자에 대해 근무시간 이후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음.
 - 이에 2021년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시 필수교육 커리큘럼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고, 담당자를 통해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용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재단을 그만둘 수 있다고 평가됨.

〈표-104〉 4-1 강제노동 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4-1 강제노동 금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재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이나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재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재단을 그만둘 수 있다. 	

2)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해당 지표는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강제노동의 예방을 위한 재단의 책무를 평가하는 목적인데,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평가하지 않음.

〈표-105〉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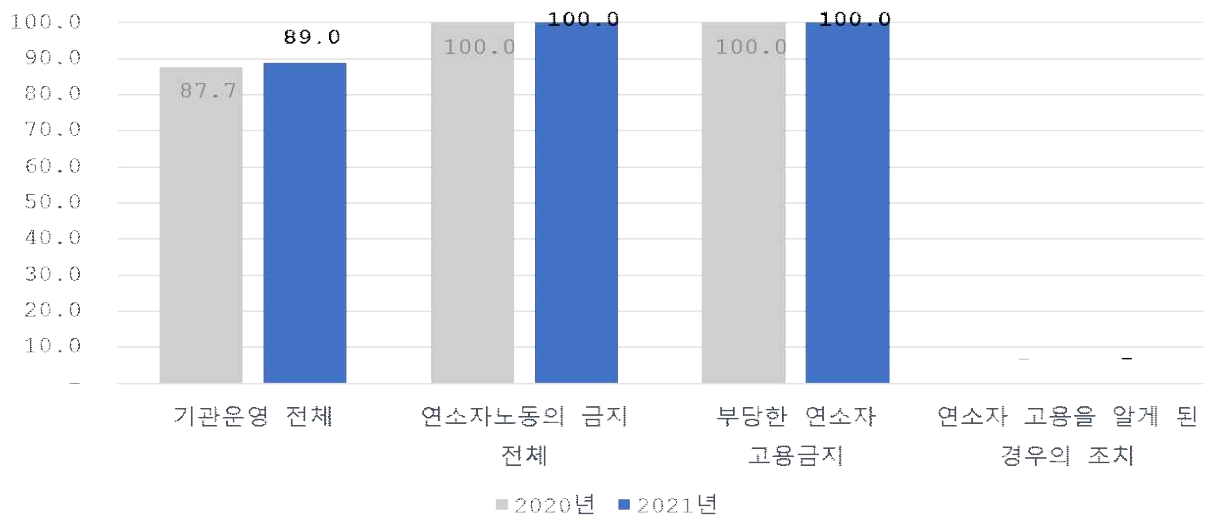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2020년 인권영향평가 당시 지적되었던 의사에 반한 주말 출근 관행이나 업무 시간 이후의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지시의 관행을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였음, 앞으로도 이와같이 노동조합 측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부당한 강제노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권장함.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연소자 노동의 금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0점으로 산출됨.
- 2020년 100.0점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연소자 노동의 금지’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2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지표의 경우 6개의 세부지표 중 4개의 세부지표가 ‘예’, 2개의 세부지표가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어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표의 경우 9개 항목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 재단은 부당한 연소자 고용을 하지 않고 현재, 연소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섭외행사도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7]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06〉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인권영향평가 결과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4				2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8
합계		4				10

나. 지표별 의견

1)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 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의 연소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고 있음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표-107〉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재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재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2)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해당 지표는 재단이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인데,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평가하지 않음.

〈표-108〉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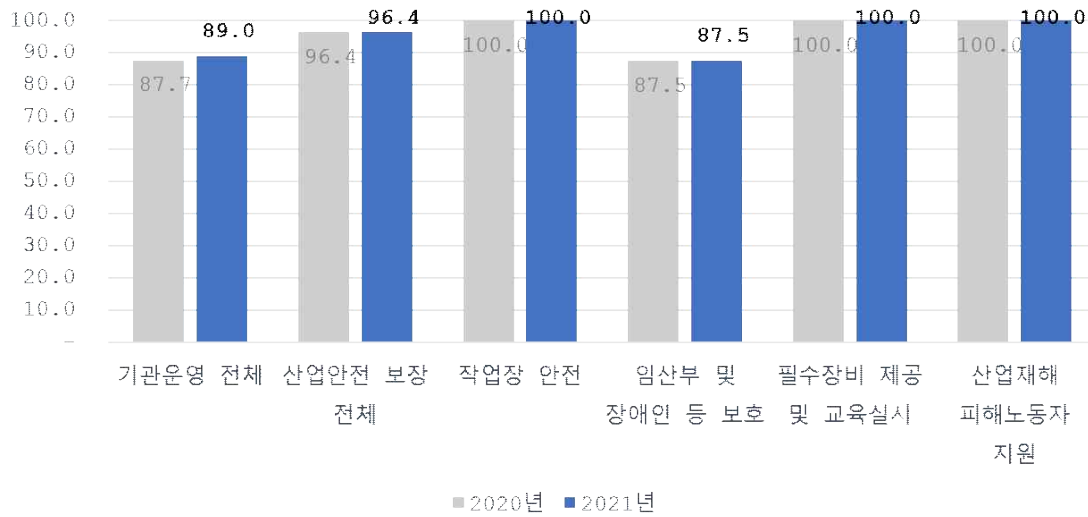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특별한 권고사항 없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직접 고용 및 섭외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재단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연소자 문화예술인의 인권에 대해 더욱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함.

6. 산업안전 보장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산업안전 보장'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96.4점으로 산출됨.
- 2020년 96.4점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산업안전 보장'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작업장 안전' 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지표 중 4개의 세부지표가 '예'로, 1개의 세부지표가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의 경우, 4개의 세부지표 중 3개의 세부지표가 '예'로, 1개의 세부지표가 '보완필요'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87.5점으로 산출되었음.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지표 중 3개의 세부지표가 '예'로, 2개의 세부지표가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지표의 경우 3개의 세부지표 모두 '예'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재단은 대체로 작업장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음. 2020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설비(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도 특별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관련 법률적 의무에 대한 검토', '건물의 노후에 따른 설비설치의 어려움', '건물 진입까지의 경사로 설치', '이동 약자를 위한 안내 및 지원 조치가 있다는 점',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행정·운영 건물로서 상대적으로 이동 약자들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축된 박물관 미술관 등은 승강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필요로 평가하고 권고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함.



[그림 8] 6. 산업안전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09〉 6. 산업안전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6. 산업안전 보장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1	작업장 안전	4				1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	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3				2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3				
합계		13	1			3

나. 지표별 의견

1) 6-1 작업장 안전

- 재단은 재단 및 각 기관별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인권경영 운영규칙 제8조(산업안전 보장)].
- 위 매뉴얼에 따라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업무일지에 매일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추석연휴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작업장 안전장구와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비상 탈출구가 항시 이용 가능하고, 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 보관시설, 숙소 및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도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아님(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연 1회 측정하고 있음(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표-110〉 6-1 작업장 안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6-1 작업장 안전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 재단의 비상 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및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재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6-2 임신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신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부여, 수유 시간 부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취업규정 제99조 또는 제102조).
- 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고 있음[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취업규정 제99조(임산부의 보호)].
- 재단은 임신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키고 있음[취업규정 제100조(경미한 직무 전환)].
- 재단은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경사로 및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나, 경기상상캠퍼스의 경우,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경기상상캠퍼스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이 아닌바, 건축법 제64조 상의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장애인등편의법상 업무시설로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승강기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상 그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주요부분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위 의무가 적용됨.
 - 따라서 경기상상캠퍼스의 건물이 모두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점에 비추어 위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법률적인 의무가 반드시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임신부 및 장애인 등이 재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장함.

〈표-111〉 6-2 임신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6-2 임신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장애인 및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재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 시키지 않는다. 임신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이 재단 및 재단 소속기관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3)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단체협약 제49조(안전보건교육)],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취업규정 제109조(건강진단), 단체협약 제50조(건강검진)].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거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 추후 외부 업체의 노동자가 시설 설치나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할 때, 관련 담당자가 재단의 안전상황이나 작업상 필요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려의무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표-112〉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 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를 지체 없이 지급함[취업규정 제65조(위로금), 단체협약 제55조(재해보상)].
-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표-113〉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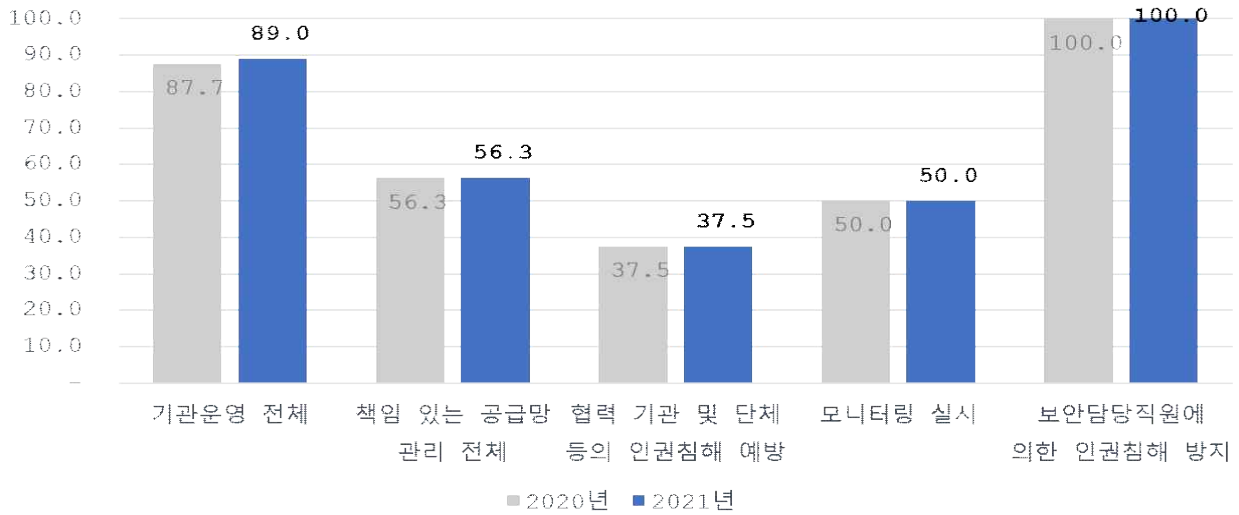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장애인 등이 재단 및 재단 소속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단 시설 내 경사로 및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56.3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2020년 56.3점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3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의 경우 4개의 세부지표 중 3개의 세부지표가 '보완필요'로, 1개의 세부지표가 '아니오'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37.5점으로 산출되었음.
- '모니터링 실시' 지표의 경우 2개의 세부지표 모두 '보완필요'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50점으로 산출되었음.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의 경우 4개의 세부지표 중 2개의 세부지표가 '예'로, 2개의 세부지표가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단은 대체로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의 인권보호 의무를 확인하고, 요구하며, 준수 여부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2021년에도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함. 다만, 재단은 앞으로 계약서에 서면으로 인권보호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계획들을 회신한 바, 2022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은 시설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의 상황과 크게 변동된 점이 없음.



[그림 9]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1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영향평가 결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3	1		
7-2	모니터링 실시		2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2
합계		2	5	1		2

나. 지표별 의견

1)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며 [임직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대방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부당 이익 제공 등을 하지 않고 상대방 임직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절차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음 (임직원행동강령 운영규칙 별제 제20호 서식). 문예공모지원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정기공모, 특별공모, 기획공모의 지원신청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업수행자 전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절차 등을 수립할 의무 및 사업수행의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이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호 의무 이행 요구 절차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 기관 및 단체를 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재단은 앞서 서술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을 통해 일부 인권보호·준법 의무를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는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에서 협력기관의 사업 활동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인권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9조(책임 있는 협력관계)], 이를 위해 상술한 각서 등 외에는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2021년 보완계획에서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계약 시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서 확인한다’는 보완계획을 밝힌바, 향후 인권영향평가에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115〉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및 지원사업 대상 등의 협력기관과 단체 등(이하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 재단은 모든 계약에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시킨다. •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 기관 및 단체를 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7-2 모니터링 실시

-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관리 감독 차원에서 현장방문, 상담 등을 진행하나, 인권보호 준수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여 체계적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에서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목표를 내세우거나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9조(책임 있는 협력관계)], 이를 위해 상술한 각서, 서약서 등 외에는 시정 요구 및 가능한 제재조치를 정하는 내부 지침이나 절차가 없음.

〈표-116〉 7-2 모니터링 실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7-2 모니터링 실시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

3)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재단은 시설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의하고 있음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19조(인권교육)].
- 재단은 보안사무를 외주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표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표-117〉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재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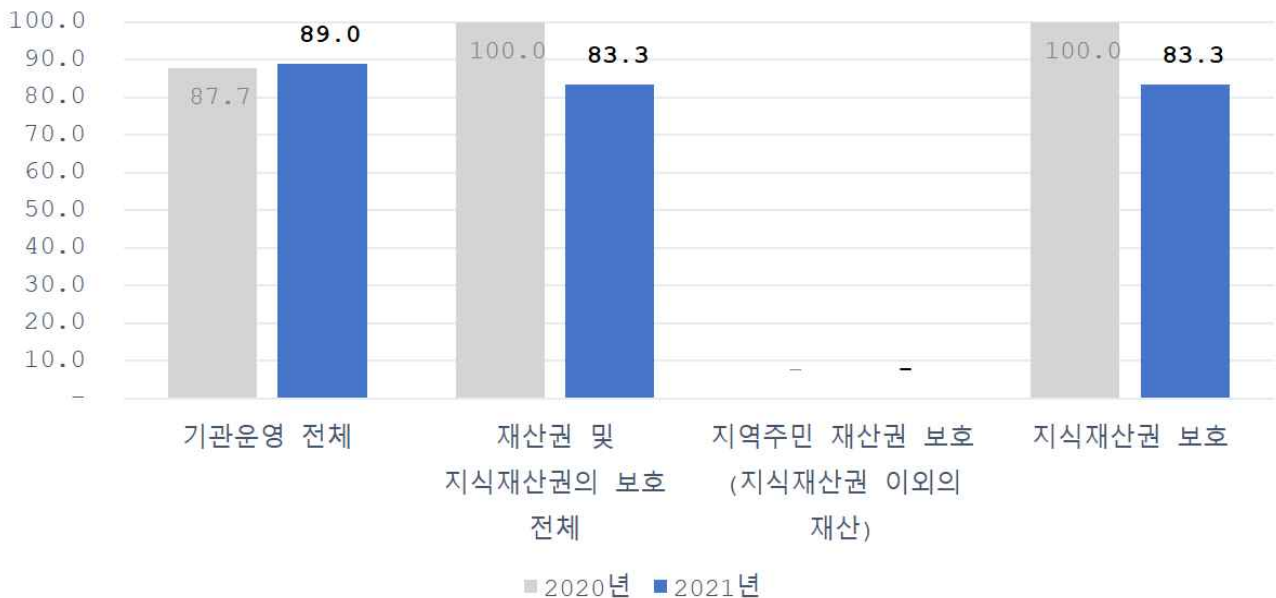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일부 준법 의무 서약을 징구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인권보호 의무를 요구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함.
- 2021년 중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 계약 체결 시 계약 내 인권 보호, 인권 존중 준수 조항을 삽입하고 문서로서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바, 향후 인권영향평가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상대방의 인권준중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및 평가를 위한 재단 측의 권한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명시할 것을 권고함.
 - 과업지시서에 '주요 과업의 이해관계자를 지정하시오' 등과 같이 인권준중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음.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83.3점으로 산출됨.
- 2020년 100.0점에서 16.7점 하락하였음.
-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2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와 ‘지식재산권 보호’로 나누어져 있음.
- 이중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지표의 경우 7개의 세부지표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우 4개의 세부지표 중 1개 항목에서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고, 기존의 2개 항목은 ‘예’로 평가되었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록경영관리지침 마련 및 시스템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된 지표는 아직 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보완필요로 평가되었음. 이에 따라 83.3점으로 산출되었음.
- 따라서 점수 자체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 비해 낮아졌지만, 유무형의 예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재단의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종합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이 완료되고 개인정보 및 지식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잘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0]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18〉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1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7
8-2	지식재산권 보호	2	1			1
	합계	2	1			8

나. 지표별 의견

1)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전액 출연한 공공기관이며, 토지의 소유권은 모두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건물 또한 위탁운영의 형식임. 따라서 이 지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119〉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8-1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2) 8-2 지식재산권 보호

- 재단은 재단과 관련한 여러 사업에 있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8-2-2 세부지표, '재단은 저작권이나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는 지표는 주로 해외에서 직접적인 저작권과 관련한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원주민이 오랜 시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 형태의 권리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경기문화재단의 활동과 관련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판단함.
- 재단은 재단의 활동과 연관되어 지식재산권의 양수 및 이용허락 등을 받을 때, '출판물 제작관리 규칙 제5조(저작권)'과 재단의 '뮤지엄숍 운영 문화상품관리규칙 제17조(지적재산권)'의 조항을 준수하고 각 단위 사업별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8-2-4 세부지표의 경우,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새롭게 신설된 지표로, 많은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재단의 사업 특성 및 2021년에 기획된 '지식재산권 관리 종합 지침' 마련 및 '기록경영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임. 홈페이지 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시,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지식재산권 관리 종합 지침 마련 및 기록경영시스템 개발의 구체적 계획 등을 근거로 이해관계자들과 면담 후 보완필요로 판단함.

- 기록경영시스템은 현재 개별사업담당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지원사업 참여자에 관한 정보, 관련 저작권 처리 방식, 지식재산권(저작권, 개발소스, 예술관련 저작물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 조건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모두 전산화하고 공통된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위 매뉴얼은 협업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저작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공개여부를 정하며, 원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계약 등)에 대한 매뉴얼(지침)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부서와 총괄 행정부서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가 있는 사안에서 이종으로 확인 및 검토가 가능하고, 전사적인 대응을 바로 할 수 있어, 더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표-120〉 8-2 지식재산권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8-2 지식재산권 보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타인의 지식재산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모든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이용허락 등을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재단이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사업운영에서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다.

다. 권고사항

- 재단의 업무 특성상, 문화예술과 관련한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느 기관보다도 더 큰 책임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바, 2021년 하반기에 계획된 지식재산권 관리 종합 지침 및 기록경영시스템의 개발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함.
- 위 기록경영시스템의 경우, 전산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의 이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 이슈가 함께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권고함.

9. 환경권 보장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90.0점으로 산출됨.
- 2020년 87.5점에서 2.5점 상승되었음.
- '환경권 보장'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그리고 '비상계획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는 5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4개 항목에서 '예'로 나머지 1개의 세부지표에서 '아니오'로 평가되었으며, 80점으로 산출되었음.
-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에서는 2개 세부지표는 '예'로 평가되었고, 1개 세부지표는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은 5개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있고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음.
- '비상계획수립'에 관한 지표는 총 5개의 세부지표 중, 3개 세부지표가 '예'로 평가되었고 2개 지표는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여, 100.0점으로 산출되었음.



[그림 11] 9. 환경권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 121〉 9. 환경권 보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9. 환경권 보장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4		1		
9-2	환경정보의 공개	2				1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9-4	비상계획 수립	3				2
	합계	9		1		8

나. 지표별 의견

1)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환경정보 공개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으로 관련 자료를 등록 및 관리해야 함. 2020년의 평가에서는 아직 해당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음. 이에 따라 일부 세부지표에서 ‘해당없음’으로 평가됨.
- 2021년에는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환경경영체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21년부터는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 가능한 목표를 설정 및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온실가스감축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등록 관리하고 있음.
- 재단은 2021년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의 경영평가 평가지표인 사회적 가치-친환경경영 항목과 녹색 제품 의무 구매 등을 통해 환경성과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122〉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재단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재단은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9-2 환경정보의 공개

- 재단은 2020년 평가에서는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였으나, 시스템상 현재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어 모두 '예'로 평가함.
- 다만, 9-2-3번 지표의 경우 관련 환경정책개발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평가함.

〈표-123〉 9-2 환경정보의 공개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9-2 환경정보의 공개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공급자, 시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3)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경기문화재단의 주 사업은 물론, 기관운영의 전반적 특성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 또한 해당 지표의 취지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함. 더불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해당없음'으로 평가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7,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표-124〉 9-3 환경정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9-3 환경정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4) 9-4 비상계획 수립

- 재단은 재단 및 기관별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화재, 태풍, 지진, 비상시 근무, 미아 발생 등의 항목에 대해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소방계획서에 따라 시설관리 부서에서 일일 관리하고 있음.
- 재단은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논의하여 비상사태시 대피방법을 숙지하게 하고 있음.
- 9-4-5 세부지표의 경우 재단과 의료기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비교적 가까움에 따라 '해당없음'으로 평가함.

〈표-125〉 9-4 비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9-4. 비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재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재단은 비상사태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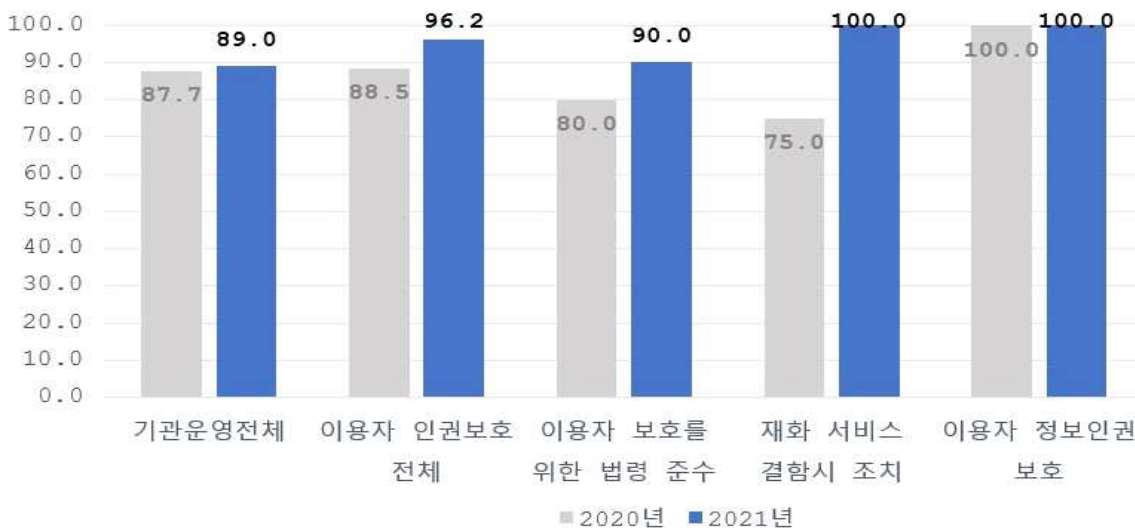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환경정보 공개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이후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경기문화재단이 비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등과 관련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의 필수 역할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재단 전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예방적 역할에 대해 재단의 모든 활동에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특히나 환경에 대한 정기 교육이 없는 부분은 추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기 교육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

10. 이용자 인권 보호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이용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96.2점으로 산출됨.
- 2020년 88.5점과 비교하여 7.7점 상승하였음.
- 이용자 인권보호에 관한 평가지표는 총 3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에서는 5개의 세부지표에서 4개의 세부지표에서 ‘예’로, 1개의 세부지표에서 ‘보완필요’로 평가되었으며, 90.0점으로 산출됨.
-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의 경우 2개의 세부지표에서 모두 ‘예’로 평가되어, 100.0점으로 산출됨.
-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는 6개의 세부지표 중 6개 모두에서 ‘예’로 평가되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됨.



[그림 12] 10. 이용자 인권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26〉 10. 이용자 인권보호 인권영향평가 결과

번호	10. 이용자 인권 보호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4	1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시 조치	2	0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6	0			
	합계	12	1			

나. 지표별 의견

1)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 2021년 4월 개정시행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지지씨멤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재단은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 공표, 행정정보 공개, 경영고시, 정보공개청구, 규정규칙 공개 및 데이터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관, 사전예약 등에 대한 이용방법,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속이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 언론홍보위원회 운영규칙 제3장(위원회의 사무)을 준수하고 있음.
- 재단은 재단의 각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영어로 제작하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 다국어 브로셔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특히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표-127〉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 등 서비스 (이하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방법, 가격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2)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 재단은 지지씨멤버스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점을 알리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재단은 이용자가 재단의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손실을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3조(사용료의 반환) 경기문화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경기상상캠퍼스 운영규칙 제 16조(시간 및 사용료) 3항, 제21조(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표-128〉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를 조속히 시정한다. •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3)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 재단은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 표기에 대한 설명은 이용자 인권보호 지표 설명 부분 참고)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 경기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규정 및 지지씨 멤버십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침에 관해서는 지지씨멤버스 회원가입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고 있음.
- 재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규칙 제 2절, 제19조(공개서버 보안관리), 제2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제21조 (사용자계정 관리 및 보안 정보 인가), 제22조(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수집에 대해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동의한 목적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129〉 10-3 이용자 사생활 보호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재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이해관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이해관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이해관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이해관계자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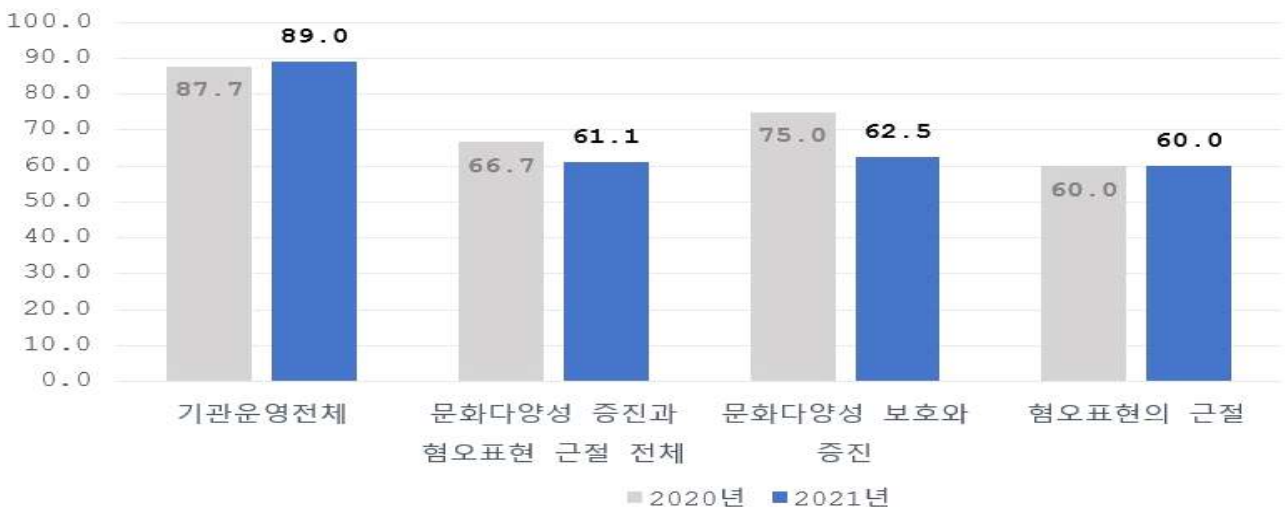
다. 권고사항

- 재단의 특성상 연간 많은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이 제공하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결함으로 이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음.
- 피해 발생 이전에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제도,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를 알리고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재단의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나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하지만, 현재 재단의 매우 일부 사업에서만 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언어 제공, 전문용어 사용 자제,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 추가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현재 일부 사업에 국한된 다국어 안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61.1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2020년 66.7점과 비교하여 5.6점 하락하였음.
-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에 대한 평가지표는 총 2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혐오표현 근절'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지표에서는 4개의 세부지표에서 1개의 세부지표가 '보완필요', 1개의 세부지표는 '아니오'로 평가되었으며, 62.5점으로 산출되었음.
- '혐오표현의 근절' 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지표 중 4개의 세부지표에서 '보완필요'가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60점으로 산출되었음.
-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은 2020년 지표 구성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지표와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2020년 최초 평가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아짐.
- 세부지표 11-1-4 포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2020년의 경우 최초 평가인 점을 감안하여, '보완필요'로 평가하였으나, 2021년 평가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지 않아 '아니오'로 평가됨에 따라 전체 점수가 하락되었음.



[그림 13]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

〈표-130〉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11.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2	1	1		
11-2	혐오표현의 근절	1	4			
	합계	3	5	1		

나. 지표별 의견

1)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 재단은 인권경영선언과 인권운영규칙에서 문화다양성이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음.
- 재단은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1조(목적), 제 9조(책임있는 협력관계)에서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
- 재단은 예술교육팀의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안내서 제작사업등을 진행하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등 성과로 인식하고 있음.

〈표-131〉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보호·증진된 사업 및 기획을 재단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적 시도와 기획을 권장하기 위해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포상하고 사례로 공유하고 있다. 	

2) 11-2 혐오표현의 근절

- 재단은 재단의 인권경영선언문과 인권경영 운영규칙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칙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나, 혐오표현 금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 재단은 경영본부 인사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연 1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단은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2장의 제5조에 근거하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직원 인권 보호) 규정과 제6장(인권침해구제)을 통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표현은 없음.
- 재단은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나 그 홍보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재단은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칙’에 근거하여 혐오표현 발생 시, 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6장(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132〉 11-2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1-2. 혐오표현의 근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천명한다. •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사와 대응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 혐오표현 발생 시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권고사항

- 문화다양성 증진은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특히나 공공기관에서의 이에 대한 책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재단의 각종 사업은 물론 경영에 있어서도 각별한 이해가 필요함.
- 재단의 모든 활동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재의 수단 이외에 자발적인 노력이 담보되어야 더욱 큰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를 응원하고 포상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권고함.
- 한국사회 전체에 혐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행복한 일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음. 현재 재단의 인권경영선언문과 인권경영 운영규칙을 통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으나, ‘혐오표현’을 인권경영선언과 인권경영 운영규칙 또는 관련한 규칙 등에 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한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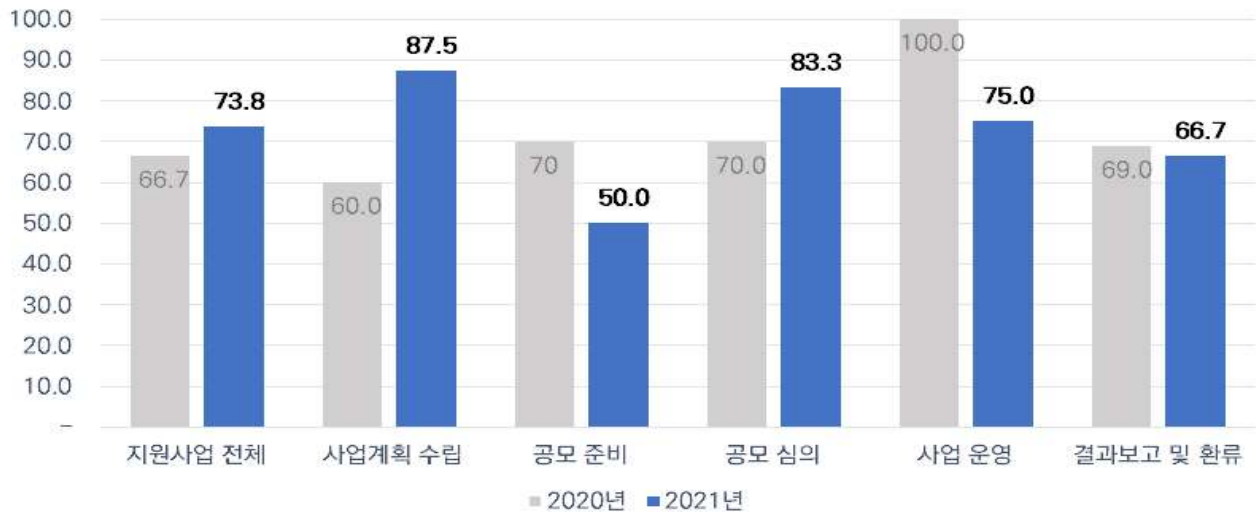
VI. 사업운영 부분 평가결과

VI. 사업운영 부분 평가결과

12. 지원사업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결과, 73.8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세부지표별로 보았을 때,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이 87.5점으로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 중 가장 높지만, '공모 준비'의 점수는 50.0점으로 낮음.
- 지원사업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는 2020년 66.7점에서 2021년 73.8점으로 7.1점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 수립', '공모신청' 단계에서 전년 대비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향상됨.



[그림 14] 12. 지원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 지원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세부지표를 충족한 '예'에 해당하는 지표가 13개지만, 보완 필요한 영역은 5개(총 지표 21개)로, 전년 대비 보완 필요 지표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음(2020년 보완 필요 지표 개수 12개 / 총 지표 24개).

〈표-133〉 12.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2. 지원사업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3	1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2		2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4	2			
12-4	지원사업 운영	2	2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		1		
합계		13	5	3		

나. 지표별 의견

1)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위해 경기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경영기획실-3370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 작성 제도화 시행 알림’.)
- 또한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초문화재단과 예술인의 의견 반영을 위해 기초 재단 및 예술인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찾아가는 문화예술 간담회 (문예진흥팀, 2021.02.03.)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간담회 (예술진흥실, 2021.08.04.)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예술가들의 정보 접근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지원사업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며, 현장안내 운영 등을 병행하는 등, 예술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단,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공모 지원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 권고 사항의 추가적인 지적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표-134〉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협력 관계에 있는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 문화향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예술가들의 정보 접근 역량 차이를 고려한, 평등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2)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서류에 인권 침해 유발 표현 및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검토 내용에 따라 각 지원사업의 양식을 통일하여 배포함.
- 또한,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류와 과정에서 이해 가능한 용어와 수준을 사용하기 위해 문예진흥팀에서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자치법규 용어 순화 주요 사례 안내를 참고하여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상의 행정용어를 순화하였으며, IT홍보팀 협조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내에 '한눈에 보는 정기공모' 메뉴를 신설하여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구조가 다소 복잡한 경우 동영상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 관련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 있음.
- 예술가가 지원사업 공모 심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 관계자 혹은 참여자의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 의사소통이 불편한 예술가에게 지원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 있음. 특히, 심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나 재단 담당자가 심의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표-135〉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표현과 내용이 있는지 점검한다. •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와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 관련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예술가 중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정도의 장애나 제약이 있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3)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규칙 제4조 지원사업 심의에서 평가위원의 공정심사를 위한 언어/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점검 및 제재,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을 명시하여 해당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업 심의절차와 방식,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규칙에서는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자에 대한 제외 및 제재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침에 인권 침해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할 필요 있음.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규칙 제13조 지원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는 다음의 7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 (7)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규칙 제4조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조항에서는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규칙에 명시할 필요 있음.

〈표-136〉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이 공정심사에 위배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지침을 배포하고, 위반 시 평가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절차와 방식에 대해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에 대해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 및 예술가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였거나 연루된 자를 지원신청 또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성별·연령·지역 등 세부 요건을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4) 12-4 지원사업 운영

- 재단은 선정된 예술가·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결과물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운영 중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점검하고 있음.
-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또한, 기초문화재단과의 사업협력 및 사업 전체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고충 접수·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음.
 - 찾아가는 문화예술 간담회 (문예진흥팀, 2021.02.03.)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간담회 (예술진흥실, 2021.08.04)
- 반면,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원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외 항목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단은 지원사업 수행 시 선정단체가 개별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홍보하는 별도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경기문화재단 통합채널인 지지씨멤버스의 공지사항/게시판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한 개인·단체가 요청했을 때만 홍보를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표-137〉 12-4 지원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4. 지원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예술단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가 지원사업으로 개최되는 공연·전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5)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 재단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할 예정(해당연도 11월)이며,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 점검결과를 차년도 지원계획 수립 시 개선계획을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반면, 결과보고서에 도출된 인권증진성과 달성에 기여한 재단의 사업담당자 및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보상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향후 기초 재단과의 협의 후 실행함으로써, 제재 중심의 인권증진이 아닌 격려와 보상을 통한 긍정적 측면에서의 인권증진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 있음.

〈표-138〉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 달성에 기여한 재단의 사업담당자 및 예술가·예술단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다. 권고 사항

-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통해 사업대상자 및 사업운영 방식의 인권을 고려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내용에 양식으로 포함하여 진행할 필요 있음.
- 지원사업 공모 준비 단계는 공모 지원사업의 심의와 사업운영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사전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이동성과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재 2개 세부지표는 긍정적이거나, 2개 세부지표는 개선이 필요함. 특히, 계약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재점검하고, 예술가의 이동성과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예술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지원사업 공모 심의 단계에서는 주체가 다양하고 세부적 단계가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가 많은 영역임. 이를 위해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내에 지원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지원사업의 심의에 해당 조항을 통해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인권 침해 유발 및 연루자에 대한 제재 및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보장 이외에도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을 운영규칙에 명시하는 등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운영규칙 개선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지원사업 운영 단계에서 사업운영의 내용 및 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평가지표 및 평가점검의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세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지기 바람. 또한, 기초 재단, 예술가, 예술단체의 고충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초재단 간담회 및 예술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사업 운영에서의 인권증진 성과가 발견됨. 다만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에서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가 명문화될 필요 있으며, 재단이 지원사업으로 인해 개최되는 공연·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소수자가 정보 접근성 및 이동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지원사업의 결과보고 및 환류 단계에서 인권성과에 주목하는 것은 사업계획, 심의 및 선정, 운영과정에서 인권 리스크를 제거하는 제재 중심의 인권영향평가 활용을 긍정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 특히, 사업 결과보고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예술단체의 인권증진 성과를 포함하고, 미달성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한 재단 담당자, 예술가·예술단체를 보상함으로써 긍정적 환류를 강화하기 바람.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1) 7개 박물관·미술관 전체 결과

-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58.4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세부지표별로 보았을 때, '전시기획' 및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가 만점인 100.0점을 받았으며, 이에 비해 '전시 관련 협력 관계' 및 '전시 홍보 및 운영'의 평가점수는 50점 미만으로 낮음.
-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총 7개로, 점수의 산출은 각 7개 관의 개별 인권영향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그림 15]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2) 7개 박물관·미술관 개별 결과

- 7개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기획', '전시 홍보 및 운영',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의 평가점수는 경기문화재단 전체의 지침 및 규정이 박물관·미술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7개 박물관·미술관 모두 동일하게 같은 점수로 평가됨.
- 반면, '전시 관련 협력 관계'는 7개 박물관별로 운영하는 전시 및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단체·업체가 달라 점수의 차이가 나타남.
-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지표에서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의 4개 관은 37.5점으로 낮으며,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6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세부지표인 '전시 기획', '결과보고 및 환류'보다 점수가 낮음.

〈표-139〉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점수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실학 박물관	전곡 선사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13-1	전시기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37.5	37.5	62.5	37.5	62.5	62.5	37.5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37.5	37.5	37.5	37.5	37.5	37.5	37.5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점 (100점 만점)		54.5	54.5	63.6	54.5	63.6	63.6	54.5

〈표-140〉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박물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도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2	4	0	5

〈표-141〉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미술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도미술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2	4	0	5

〈표-142〉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백남준아트센터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백남준아트센터)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2	3	0	5

〈표-143〉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실학박물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실학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2	4	0	5

〈표-144〉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전곡선사박물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전곡선사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2	3	0	5

〈표-145〉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어린이박물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2	3	0	5

〈표-146〉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1	전시기획	2				1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2	4	0	5

나. 지표별 의견

1) 13-1 전시기획

-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시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시행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사전검토 항목에는 혐오표현을 사전에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의 포함 여부를 확인함.
- 다만,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표는 2021년에 박물관·미술관 대상 인권영향평가가 최초 시행되어, 해당 사항이 없으나, 올해 평가결과를 2022년에 전시사업 기획에 반영하여 전시기획에서의 인권증진 성과를 달성할 필요 있음.
- 전시기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일괄적으로 배포된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7개 박물관·미술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표-147〉 13-1 전시기획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13-1. 전시기획 (7개 박물관·미술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기획 시 전시내용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2)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 경기문화재단은 박물관·미술관 행정팀을 일원화하여, 박물관·미술관의 계약에 일괄적으로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반면,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박물관·미술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시 참여자(예술가·예술단체)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는 사항은 평가지표에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하였으나, 박물관·미술관이 점차 외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위해 지역예술가·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공모사업이 설계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공모사업 지침에 참여작가·예술단체의 정보 접근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을 위해 외부협력자(예를 들어, 전시 설치 관련 용역업체, 시설관리 외부 인력, 자원봉사 및 안내인력 등)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나, 이들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협력자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의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가 노력하는 암묵적 조치 이외에 이를 제도화하는 보완이 요구됨.

〈표-148〉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공모사업 진행 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접수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

-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이행과 '과업지시서'에서 인권요소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 요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실감 콘텐츠 제작, 공간 조성공사, 전시디자인 등의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통해 공정거래 서약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갑질 예방 등 인권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단,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표-149〉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백남준아트센터·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백남준아트센터·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 침해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공모사업 진행 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백남준아트센터 · 전곡선사박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작성한다. •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접수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

- 실학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가 노력하는 암묵적 조치 이외에 이를 제도화하는 보완이 요구됨.
- 실학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또한 경기도박물관 ·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전시 운영을 위해 외부협력자(예를 들어, 전시 설치 관련 용역업체, 시설 관리 외부 인력, 자원봉사 및 안내인력 등)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협력자들이 인권침해를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150〉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실학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3-2. 전시 관련 협력 관계 (실학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외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 · 미술관은 공모 사업 진행 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접수의 전 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

3)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 전시 홍보 및 운영단계에서 재단 소속 박물관 · 미술관은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 · 시행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전시홍보물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및 소재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7개 박물관·미술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정보접근성과 이동성을 증진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반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에 대한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자료 및 매뉴얼을 구축하는 노력이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박물관·미술관의 외부 협력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은 박물관·미술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재단 전체적으로 협력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표-15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7개 박물관·미술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4)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협력 관계

- 박물관·미술관은 연구결과물로 도출되는 보고서, 발간물 등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배포하고 점검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차년도에는 해당 점검사항에 관한 결과가 도출되어 환류될 필요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회차로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불가하여 '해당 없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차년도에는 인권영향평가 점검내용을 전시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인권증진 성과와 보상, 인권증진 개선계획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필요 있음.

〈표-15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세부결과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7개 박물관·미술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연구결과물(보고서, 발간물 등) 및 전시도록 등 전시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 증진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 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다. 권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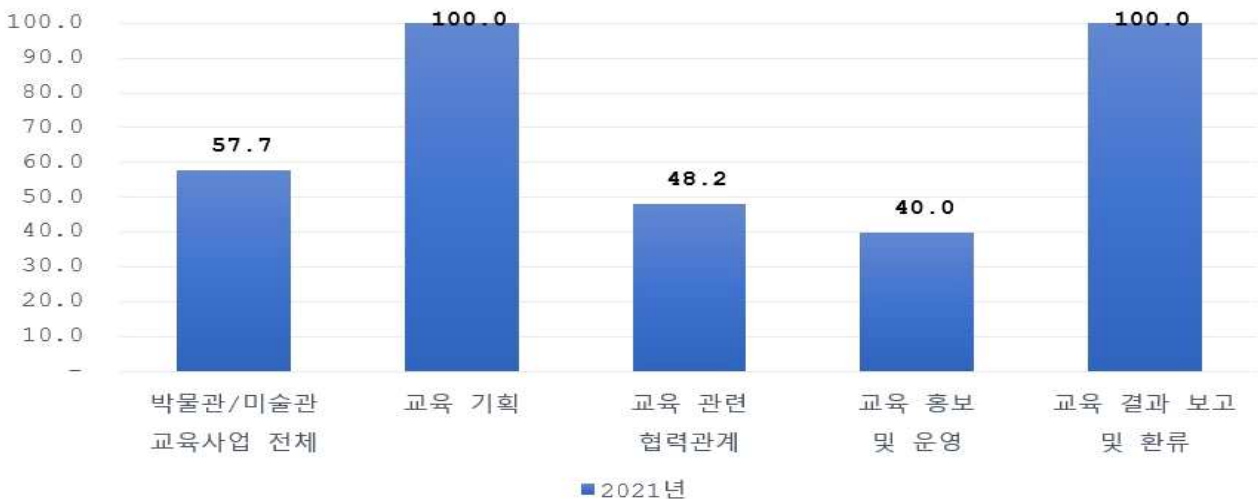
- 박물관·미술관은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반영하여 전시기획의 내용 및 주제를 점검해야 하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따라서 검토 항목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에 적용 가능한 세부 지침을 개발하는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전시 관련 협력 관계 단계는 박물관·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운영하는 데에 관련된 외부 협력자(예, 실감 콘텐츠 제작, 전시공간 조성, 전시디자인 등)의 인권증진과 이들의 인권 침해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계약 시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특히, 일부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과업지시서에 인권 관련 요소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 반면, 외부협력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 유발 및 연루사항에 대한 계약 철회 등의 더욱 폭넓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박물관·미술관 외부협력자의 인권 측면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시 홍보 및 운영단계에서는 7개 박물관·미술관 모두 전시홍보물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및 소재 포함 여부 검토 등)를 확인하는 제도인 경영기획실의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기반으로 더욱 세부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함. 또한,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을 지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발전방안을 고려했을 때, 개별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개설 여부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게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또한, 박물관·미술관 외부협력자들의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자료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바람.
-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의 결과보고 및 환류 단계는 2021년 1회차 평가임을 고려하여, 총 4개 세부지표 중 3개 지표가 2021년에는 '해당 없음'으로 평가되었으나,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증진 성과 및 개선계획, 인권증진 성과를 달성한 개인에 대한 보상 관련된 사항이 실제 환류되었는지를 평가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요구됨.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1) 7개 박물관·미술관 전체 결과

-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57.7점의 인권영향평가 점수가 산출됨.
-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기획', '교육 관련 협력 관계', '교육 홍보 및 운영',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의 단계로 구성됨.
- 세부지표별로 보았을 때, '교육기획' 및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가 만점인 100.0점을 받았으며, 이에 비해 '교육 관련 협력 관계' 및 '교육 홍보 및 운영'의 평가점수는 50점 미만으로 낮음.
-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총 7개로, 점수의 산출은 각 7개 관의 개별 인권영향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그림 16]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부분 인권영향평가 결과

2) 7개 박물관·미술관 개별 결과

- 7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기획', '교육 홍보 및 운영',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지표'의 평가점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경기문화재단 전체의 인권증진 성과가 반영되어 같은 점수로 평가됨.
- 반면, 교육 관련 협력 관계는 7개 박물관별로 운영하는 교육 및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단체·업체가 달라 이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협력 관계에 있어,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37.5점으로 낮은 편이며,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62.5점이나, '교육 기획'과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단계'보다 점수가 낮음.
- 또한, 교육 홍보 및 운영에서도, 7개관이 30점에서 50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교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표-153〉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점수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 아트 센터	실학 박물관	전곡 선사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14-1	교육기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37.5	37.5	62.5	37.5	62.5	62.5	37.5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40.0	30.0	30.0	50.0	50.0	40.0	40.0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점 (100점 만점)		54.2	50.0	58.3	58.3	66.7	62.5	54.2

〈표-154〉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박물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도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	2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3	4	0	5

〈표-155〉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미술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도미술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	1	3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2	5	0	5

〈표-156〉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백남준아트센터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백남준아트센터)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	1	3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2	4	0	5

〈표-157〉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실학박물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실학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2	1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2	4	0	5

〈표-158〉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전곡선사박물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전곡선사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2	1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7	2	3	0	5

〈표-159〉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도어린이박물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2	1	1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	2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6	3	3	0	5

〈표-160〉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_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4-1	교육기획	2				1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1	1	2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	2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1				3
합계		5	3	4	0	5

나. 지표별 의견

1) 14-1 교육기획

- 교육기획 시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시행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고 있음.
- 해당 사전검토 항목에 따라, 혐오표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표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대상 인권영향평가가 2021년 현재 최초 시행되어, 해당 사항이 없음. 그러나 올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2022년에 교육사업 기획시 반영하여 교육기획에서의 인권증진 성과를 달성할 필요 있음.
- 교육기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일괄적으로 배포된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7개 박물관·미술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표-161〉 14-1 교육기획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14-1. 교육기획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수립 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 예술 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시 교육내용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2)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 경기문화재단은 박물관·미술관 행정팀을 일원화하여, 박물관·미술관의 계약에 일괄적으로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반면, 현재 7개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모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참여자(교육강사·예술가·예술단체)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표는 평가에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이 점차 외부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지역의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위해 지역의 교육강사 및 예술가·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공모사업이 설계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공모사업 지침에 참여 교육강사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실학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운영을 위해 외부협력자(교육 강사, 교육 단체, 자원봉사 및 안내인력 등)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들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협력자들이 인권 침해를 했을 때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실학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조치 이외에 이를 제도화하는 보완이 요구됨.

〈표-162〉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실학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활동 진행 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 업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이행과 '강사 계약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 표준서식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 공정거래와 인권요소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 요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실감 콘텐츠 제작, 공간 조성공사, 교육디자인 등의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통해 공정거래 서약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갑질 예방 등 인권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교육 강사나 예술가등) 및 협력단체 또는 업체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되었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및 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는 관행이 있으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문서로 명기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표-163〉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백남준아트센터 · 전곡선사박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4-2. 교육 관련 협력 관계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설치를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과정에서 협력 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3)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 교육 홍보 및 운영시 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시행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홍보물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및 소재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공공 문화기반시설인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또한 이동,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현재 7개 박물관·미술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보취득 역량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정보접근성과 이동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교육 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표에서는 다른 지표와 달리 박물관·미술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와 시행을 위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함.

-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에 대한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인권증진 교육을 위한 자료 및 매뉴얼을 구축하는 노력이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 박물관·미술관의 외부 협력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은 박물관·미술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재단 전체적으로 협력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 홍보 및 운영 지표에서 7개의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유사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14-3-2 세부지표인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관람·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세부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경우 각종 교육활동에 다양한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경기도박물관은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연령과 대상 교육수혜자를 위한 예산과 관련 신규사업 제시 노력을 시행했으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교육예산에서 사회적소수자 교육나눔 사업을 1건 시행하였음. 그러나 지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개선의 여지가 보여, '보완필요'로 평가함.

〈표-164〉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4-3. 교육 홍보 및 운영(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관람·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육 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재단 경영기획실의 사전검토 항목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교육 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표-165〉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_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14-3. 교육 홍보 및 운영(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관람·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 실학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을 함. 실학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의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문화나눔의 형식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로 평가하였음.

〈표-166〉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_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

14-3. 교육 홍보 및 운영(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보완 필요'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관람·참여를 위한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각종 교육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4)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협력 관계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진행 후 결과보고서나 발간물 또는, 교육 진행의 결과물에서 등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배포하고 점검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차년도에는 해당 점검 사항에 관한 결과가 도출되어 환류될 필요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이 1회차로 기존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가 불가하여 '해당 없음'으로 평가하였음. 따라서 차년도에는 인권영향평가 점검내용을 교육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인권증진 성과와 보상, 그리고 인권증진 개선계획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필요 있음.

〈표-167〉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세부결과_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예'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다. 권고 사항

-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의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실이 2021년 8월 17일에 배포한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활용하여 교육을 기획할 때 사전에 그 내용 및 주제를 점검해야 함. 그러나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이 해당 검토항목을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번 배포된 사전검토 항목이 배포된 시기가 오래지 않아 관련 사항을 평가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검토 항목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에 적용 가능한 세부 지침을 개발하는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 관련 협력 관계 단계에서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예: 교육강사, 교육단체, 예술가 및 단체등)의 인권증진과 이들의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위해 계약 시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과업지시서에 인권 관련 요소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
- 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협력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외부협력자의 인권 침해 유발 및 연루사항에 대한 계약 철회 등의 더욱 폭넓은 조치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박물관·미술관 외부협력자의 인권 측면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 홍보 및 운영단계에서는 7개 박물관·미술관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교육홍보물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및 소재 포함 여부 검토 등)를 확인하는 제도인 경영기획실의 '경기문화재단 주요사업 사전검토 항목'을 기반으로 더욱 세부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함.
-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 현재 개발중인 '더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 등을 교육 실행, 홍보,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향후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며,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을 지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발전방안을 고려했을 때, 개별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개설 여부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그리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등이 확대 시행되어야 함.
-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함. 또한, 박물관·미술관 외부협력자들의 인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자료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바람.
- 교육사업의 결과보고 및 환류 단계는 2021년이 첫해로 환류를 평가할 수 없어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으나, 2022년 평가에서는 해당 지표가 평가될 것임. 따라서, 향후 교육사업시에 필요한 '인권증진 성과와 개선 계획' 및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비롯한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함.

Ⅶ. 별첨

2021년 경기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기관운영 부분

번호	구분	지표 구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4 인권경영성과
		1-5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1 결사 · 단체교섭의 자유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금지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6-1 작업장 안전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7-2 모니터링 실시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1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8-2 지식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2 환경정보의 공개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4 비상계획 수립
10	이용자 인권보호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10-3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 근절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11-2 혐오표현의 근절

지원사업 부분

번호	구분	지표 구분
12	지원사업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12-4 지원사업 운영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박물관·미술관 부분

번호	구분	지표 구분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13-1. 전시기획
		13-2. 전시 관련 협력관계
		13-3. 전시 홍보 및 운영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
14	박물관·미술관 교육사업	14-1. 교육 기획
		14-2. 교육 관련 협력관계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

■ 세부평가지표 기관운영 부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정책 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3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4	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소계		6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4	재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한다.	○			
5	재단과 재단 소속기관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소계		5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2	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				
3	재단은 인권경영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				
4	재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5	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6	재단이나 재단 소속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				
소계		6				

1-4 인권경영성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한다.	○				
4	보고는 재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5	보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표와 문장으로 작성한다.	○				
6	보고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은 거친다.	○				
7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소계		7				

1-5 구제절차 마련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5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계		6				

1번 종합계

1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30					

2. 고용상의 비차별 및 권리보장

2-1 고용상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계	8	2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재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6	재단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소계		6				

2-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재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				
3	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소계		3				

2-4 이주노동자 비차별 및 권리보장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2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소계		2				1

2번 종합계

2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19	2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1. 결사 · 단체교섭의 자유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한다.	○				
2	재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재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4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계		4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소계		5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4				1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소계					2

3번 종합계

3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13				3	

4. 강제노동의 금지

4-1 강제 노동 금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2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재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이나 여행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재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재단을 그만둘 수 있다.	○			
소계		8			

4-2 재단 소속기관 및 협력단체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재단은 재단 소속기관이나 협력단체 등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3	인신매매, 채무 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소계					3

4번 종합계

4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8				3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5-1 부당한 연소자 고용금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재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 단, 해당 국가와 국내연소자 고용금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					○
3	재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4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5	재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소계		4				2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추가 가능).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6	재단은 연소자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7	재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	연소자들의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9	연소자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					○
소계						9

5번 종합계

5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4				11	

6. 산업안전 보장

6-1 작업장 안전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4				1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소계	3	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3				2

6-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소계	3				

6번 종합계

6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13	1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및 지원사업 대상 등의 협력기관과 단체 등(이하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			
2	재단은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3	재단은 모든 계약에 주요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4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계			3	1		

7-2 모니터링 실시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2	재단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		○			
소계			2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2	재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3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
4	재단이 보안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 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소계		2				2

7번 종합계

7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2	5	1		2	

8.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1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이외의 재산)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6					○
7					○
소계					7

8-2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소계					1

8번 종합계

8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2	1			8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2	재단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3	재단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4	재단은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재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소계		4	1		

9-2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공급자, 시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소계		2			1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발생의 예방을 원칙으로 삼는다.				
2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 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환경 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계						5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9-4 비상계획 수립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 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재단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재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4	재단은 비상사태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비상사태 용역회사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5	재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소계		3				2

9번 종합계

9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9		1		8	

10. 이용자 인권 보호

10-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 서비스 (이하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3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방법, 가격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5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소계		4	1		

10-2 재화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를 조속히 시정한다.				
2	재화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실을 당하였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한다.				
소계		2			

10-3 이용자 정보인권보호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6	○				
소계	6				

10번 종합계

10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12	1				

11. 문화다양성 증진과 혐오표현의 근절

1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문화다양성이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했다.	○			
2	재단은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3	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재단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			
4	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적 시도와 기획을 권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의 포상을 제공하고 사례로 공유하고 있다.			○	
소계		2	1	1	

11-2 혐오표현의 근절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천명했다.	○			
2	재단은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			
3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조사와 대응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		
4	혐오표현 발생 시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		
5	재단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소계		1	4		

11번 종합계

11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3	5	1			

■ 세부평가지표 사업운영 부분

12. 지원사업

12-1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0				
2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협력관계에 있는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 문화향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0				
3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예술가들의 정보접근 역량 차이를 고려한, 평등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도가 있다.	0				
4	재단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결과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0			
소계		3	1			

12-2 지원사업 공모 준비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표현과 내용이 있는지 점검한다.	0				
2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서류와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0				
3	재단은 지원사업 신청시 사업운영 관련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 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0		
4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예술가 중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정도의 장애나 제약이 있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0		
소계		2		2		

12-3 지원사업 공모 심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 및 예술가 중 인권침해를 유발하였거나 연루된 자를 지원신청 또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	○			
2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추천위원 및 평가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성별·연령·지역 등 세부 요건을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			
3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이 공정심사에 위배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지침을 배포하고, 위반시 평가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있다.	○			
4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			
5	재단은 지원사업 심의절차와 방식에 대해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6	재단은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에 대해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소계		4	2		

12-4 지원사업 운영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운영과정 및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2	재단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중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3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가 지원사업으로 개최되는 공연·전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			
4	재단은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예술가·예술단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소계		2	2		

12-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재단은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0				
2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 성과 달성에 기여한 재단의 사업담당자 및 예술가·예술단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0		
3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0				
소계		2		1		

12번 종합계

12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13	5	3			

13. 박물관·미술관 전시사업

13-1 전시 기획(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소계	2				1

13-2 전시 관련 협력관계

●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1	1	2		1

● 백남준아트센터 · 전곡선사박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2	1	1		1

● 실학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1	1	2		1

13-3 전시 홍보 및 운영(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박물관·미술관은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하여 관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재단 본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4	박물관·미술관은 전시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자료 및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		
소계		1	1	2	

13-4 전시 결과보고 및 환류(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박물관·미술관은 연구결과물(보고서, 발간물 등) 및 전시도록 등 전시 결과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2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3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4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
소계		1			3

*7개 박물관·미술관 합계

13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38	14	25		35	

14 박물관·미술관 교육 사업

14-1 교육 기획 (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수립시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예술접근성이 낮은 문화향유자를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	○				
2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수립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결과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소계		2				1

14-2 교육 관련 협력관계

●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실학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박물관·미술관은 공모사업 진행시, 참여하는 교육강사 및 예술가들이 사업의 공고, 계획 신청 및 접수의 전과정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
2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와의 계약에 대해 준법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작성한다.	○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을 위한 외부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		
4	박물관·미술관은 교육기획 및 운영시 협력하는 개인 및 협력업체 중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연루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5	박물관·미술관은 교육활동 진행과정에서 협력관계 및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협력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			
소계		1	1	2		1

● 백남준아트센터 · 전곡선사박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1	1	2		1

14-3 교육 홍보 및 운영

●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1	2	2		

● 경기도미술관 · 백남준아트센터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1	1	3		

● 실학박물관 · 전곡선사박물관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			
2	○				
3	○				
4			○		
5			○		
소계	2	1	2		

14-4 교육 결과보고 및 환류(7개 박물관·미술관 동일)

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집 등 사업 결과물에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				
2	박물관·미술관은 결과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내용을 포함한다.					○
3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에 기여한 기획자, 예술가·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이를 결과 보고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4	박물관·미술관은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결과 인권증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
소계		1				3

* 7개 박물관·미술관 합계

14번 종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합계	40	17	27		35	